

第16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4.6.8.~6.1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6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3
II.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
IV. 부록	
1. 의사일정안	23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5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7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31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41
6. 결의문채택의건	45
V. 별 책 부 록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6월 8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6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6월 8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6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6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연준 중등교육과 장께서는 해외연수 출장으로, 조계환 학

교운영지원과장은 연가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

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장한**

의사과장 김장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와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공고 제2004-7호로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30일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4년 5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5월 28일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6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9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 구현과 21세기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

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결산은 1조 1,765억 6,400만원이고, 세출은 1조 627억 7,700만원으로 1,137억 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75억 1,1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2억 7,6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1,770억 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 765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7.1%인 2,010억 9,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2.9%인 9,75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847억 2,500만원으로 89.7%인 1조 627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75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644억 3,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가

189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385억 8,300만원입니다.

또 총집행액 1조 627억 7,700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333억 1,400만원, 물건비 1,517억 2,700만원, 경상이전비 2,956억 4,600만원, 자본지출 1,604억 9,200만원, 보전지출 214억 100만원, 내부거래 및 기타 경비 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은 재산매각 4억 5,600만원, 교원단체 사무실 전세권 등 2억 5,200만원, 재산임대료 등에 1,1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등 359억 9,100만원으로 총 367억 1,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451억 3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과 학교통폐합지원비, 학교시설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1,825억 1,700만원, 잡종재산 412억 3,400만원으로 총 2조 2,237억 5,100만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19,210종에 1,004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857억 8,700만원과 목적사업지원비 580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3년 3월 개교한 흥덕고등학교와 같은 해 9월 개교한 청주 용성초등학교의 시설, 그리고 2004년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설계 등에 총 190억 5,900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 증축에 266억 3,7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에 166억 9,200만원, 학교시설 확충과 증·개축에 393억 3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553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108억 8,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교실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85억 9,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55억 800만원과 학교급식 운영 및 시설확대에 16억 6,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공사립학교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746억 5,700

만원, 시설비 등 기타사업 지원에 234억 500만원, 총 980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2)
(끝에 실음)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1)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건서(별책 2)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총 두 건에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중평군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등 납부 요청이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6조제1항에 의거 납부 요청에 의하여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3년 9월 중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교육시설 피해를 입은 영동학생야영장 재해복구비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

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8회-제1차 본회의]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2)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3)

※ 별 책 부 록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1)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건서(별책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6월 10일 (목요일) 10시 28분

議事日程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3. 결의문채택의건

附議된 案件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3. 결의문채택의건(고규강 위원 외 5인)

o 5분 자유발언(진옥경 위원)

(10시 28분 개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연준 중등교육과장께서는 해외연수 출장으로,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님과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29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눔)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차에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847억 2,46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770억 4,496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징수결정 대비 99.9%인 1조 1,765억 6,39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242억 1,460만 4,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05억 1,002만 7,000원이 포함된 1조 1,847억 2,46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9.7%인 1조 627억 7,723만 3,000원으로 1,137억 8,671만 3,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4.9%인 575억 1,054만 2,000원으로 대부분 시설공사비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5.4%인 644억 3,685만 5,00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비, 급여 및 복지후생비, 예비비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2,195만 7,000원과 2003년도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비 7,57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한 것으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67억 957만 4,000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입니다.

채무액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이 451억

278만 3,000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 통·폐합 지원 및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채인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237억 5,134만 2,000원이며, 물품의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만 9,210점에 1,004억 3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등 각 분야별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요예산 편성 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 주요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 11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관리 경비와 2003년도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각각 2,195만 7,000원과 7,57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영동학생야영장 재해복구비로 4,218만 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의문채택의건

(10시 39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여섯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고규강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이상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학교 자율적 운영 촉구를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초·중등교육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2004년 3월 3일자로 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시달 후 2004년 5월 7일자로 재차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에서는 읍·면 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당초 지침을 변경한 것은, 첫째, 헌법 제31조제1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 생각되며, 둘째,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각급 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집행청에서는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수혜자의 의견수렴이 결여된 채 일부 지역학교에 대하여 학습권을 제

한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에 저촉된다고 보며, 셋째, 당초 지침에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역학교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읍·면 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재차 시달한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점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충북 교육발전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04년 5월 7일자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 중 지역별로 제한한 금지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 및 교육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10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조 : 결의문채택의견(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고규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결의문채택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즉시 집행청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68회 회기를 마치며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소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근래 충청북도에서 일어나는 학부모 구속 사건과 체벌 학생입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김천호 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청에 걸었던 그간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본 위원이 도교육감을 비롯한 세 분의 도 교육행정 책임자에게 옥천 안내초등학교에 대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다각도로 건의하였음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아직까지 책임있는 조치가 보이지 않는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집행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보다는 갈등의 심화와 확대로 이어지

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구속된 옥천 안내초등학교 사태에 대해 지난 5월 25일 본 위원이 뒤늦은 관심을 갖게 된 이래 지역주민 면담 및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매일 아침 등교 후 시행된 초등학교 운동장 달리기의 획일적 운영에 대한 개선을 학교장에게 건의했던 학부모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옥천 안내초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의 건전한 건의가 학교장에 의해 반복적으로 묵살되면서 확대된 갈등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안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안내초등학교 사태에 대한 종전의 천편일률적인 보도내용과 전혀 다른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사태의 중요성이 이러함에도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되도록 원인규명에 착수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서 구속까지 된 것이기에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변만 하고 있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해당 학교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교육계에서는 이제 막 여러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승화되어야 하지 끝없는 혼란과 소모전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저를 제외한 6인의 충청북도교육위원들이 중학교 보충수업 금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4월 20일 초·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 교육으로 운영한다, 학습부진아,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충학습은 부득이한 경우 교육감이 허용 범위를 정하여 실시한다는 전국 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이 내용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과 충북 전교조가 단체교섭으로 시 지역 중학교 보충수업 금지를 확정하는 것만을 문제시한 고규강 위원 등 일부 교육위원이 지난 5월 행정질의회에서 전교조와의 재교섭 의사를 도교육청에 물으며 헌법소원을 운위하였고, 결국 이번 보충수업 자율운영을 집행청에 촉구하는 결의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금번 결의문 작성과정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학부모 교육권과 학교 자율운영 근거에 특정 교사단체에 대한 공격이 자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 고교 보충수업의 현실에는 눈감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율운영이라는 미명하에, 또한 수준별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보충수업 실시의 범위를 중학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파행 운영의 폭을 더욱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향후 교육계 혼란의 도화선이 될 금번 결의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에 저는 결의문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자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들과 논의하여 같은 주장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4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이번 결의서가 도내 교육갈등을 촉발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들어오르는 새순 같은 중학생들은 폭넓은 과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성을 도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교육현실이 안타깝다고 해서 백년 앞을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교육위원들이 올바른 교육의 방향에 역행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성급하고 경솔한 모습입니다.

금번 결의문 발의를 주도한 고규강 위원 등 여섯 분의 제4대 충청북도교육위원들께서는 중학교 보충수업을 둘러싼 향후 지역교육계의 혼란의 주역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활동을 2세에 대한 어른들의 억압으로 보는 학설들도 뜻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이라는 허울을 걸친 억압과 폭력은 위선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백년지대계를 위한 우리 교육의 희망은 이러한 위선에 대항하여 생명을 지켜내려는 소박한 마음들을 모아 나가는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10일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고규강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겠습니까?

(고규강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이상일

예, 발언하세요.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고규강 위원

먼저 동료위원이 교육위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주민통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나 주민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을 행정부에 건의하여 올바르게 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교육위원이고 공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헌법에 보장된 법을 무시한 공인으로서의 처사하고, 두 번째로 교육기본법 제13조2항에 학부모들의 교육권리를 모르는 처사, 교육위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처사의 행동을 했을 때 동료 위원으로서 부끄러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안내초등학교를 교육위원으로서 방문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서는 방문이 안되는 겁니다. 또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어디를 갔다고 했을 적에 장관이 와서 발언했다고 하지 개인 어떤 이름으로 발언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 요지가 교육의 교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교장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동의하는 쪽으로 발언한 처사는 교육위원이 하는 임무 중 모든 것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 교육위원을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5분 발언을 허용해 준 의사가 무엇인지, 이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서는 분명하게 5분 발언을 매일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모든 일을 부정하고 교육위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학부모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 보장을 저해하고 교권을 옹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교육위원이 반대편에서서 교권을 추락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까요?”)

● 의장 이상일

저기 이기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기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방금 진옥경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하시고, 또 연이어서 고규강 부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중에서 의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이 우리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하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느니보다는 우리가 이 의장도 거기에 대한 속고를 해서 갖고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될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위원 사이에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알부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서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자기가 이해 당할 것은 이해 당하는 이런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든지 하면 우리 충북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 의사표명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옥경 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 안내초등학교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누가 저한테 보고해 준 바도 없고, 본인이 그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5월 29일은 전주에서 소년체전이 열리는 날이라 우리 교육위원 여섯 분은 전주 현지에 학생들 응원차 출장중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교육위원이 그런 걸 조사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그렇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간 얘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이상일

발언권 안드립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상일

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폐회)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4)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5)
- ▶ 결의문채택의건(별첨 6)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6.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고 규 강 김 규 강

위 원 김 남 훈 김 남 훈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68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4. 6. 8. ~ 6. 10. (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월 8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4. 6. 8. ~ 6. 10. (3일간) 2.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3.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제안설명) 4.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6월 9일(수)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6월 10일(목) (10:30)	[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 3. 결의문 채택의 건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68-1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월 일 (제 회)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5월 28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68 - 1
----------	---------

제출연월일 : 2004. 5. 2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주요골자

2003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1,176,563,946,800원, 세출결산액은 1,062,777,233,33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57,510,54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276,171,470원으로 총 113,786,713,4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따로 붙임.

참고 사항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따로 붙임.

(별첨 3)

의안번호	제68-2호
의결 연월일	2004년 월 일 (제 회)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5월 28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68 - 2
----------	---------

제출연월일 : 2004. 5. 2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출건수 : 2건
- 지출결정액 : 97,734,000원
- 지출액 : 42,184,120원
- 잔액 : 56,549,880원
- 지출결정사항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설치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선거 관리경비 납부요청액 21,957,000원
 - 영동학생야영장 태풍 피해로 인한 시설 재해복구비 75,777,000원

예비비지출내역

(단위 : 원)

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03. 9. 30	21,957,000	0	21,957,000	
태풍 재해복구비	'03. 9. 30	75,777,000	42,184,120	33,592,880	태풍 재해복구비 (영동학생야영장)
계		97,734,000	42,184,120	56,549,880	

예비비 사용명세서 : 붙임 참조

2003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

□ 예비비 지출 사용현황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 고
장	관	항	세 항	세 세 항	목				
교육 행정	선거 관리	선거 관리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	교 육 사업비	전출금	21,957,000	0	21,957,000	교육감선거 관리 경비
교육 행정	교육 지원 기관	지원 기관 시설	지원기관 시 설	기타시설 사업비	시설비	75,777,000	42,184,120	33,592,880	태풍 재해복구비
합 계						97,734,000	42,184,120	56,549,880	

□ 예비비 지출사유

○ 선거 관리경비 납부

- 2003. 11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경비 납부요청에 의거 당초예산 190,541천원과 예비비 21,957천원 합계 212,498천원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함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집행결과 23,51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액 21,95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됨

○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

- 2003. 9. 12~9. 13일 기간 중 태풍 「매미」에 의한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설피해를 입은 영동학생야영장에 재해복구비를 지원

(별첨 4)

(제168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4. 6.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33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33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33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33
5. 토론 주요내용	33
6. 심사보고 주요내용	34
7. 심사결과	39
8. 소수의견 주요내용	39
9. 기타 필요한 사항	39

심 사 보 고 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5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4년 6월 8일)

○ 제2차 소위원회(2004년 6월 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1,176,563,946천원, 세출결산액은 1,062,777,233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57,510,542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6,276,171천원으로 총 113,786,713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1,124,214,604	1,184,724,631	1,176,563,946	1,062,777,233	113,786,713

○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184,724,631천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176,563,94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1,062,777,23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7%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113,786,713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57,510,542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56,276,171천원은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56,276,171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18,927,931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38,582,611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1,184,724,631	1,177,044,968	1,176,563,946	13,816	467,204	99.3%	99.9%

2003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1,177,044,96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176,563,946천원이 수납되고 13,816천원의 불납결손과 467,204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3%,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975,451,424천원(82.91%)

- 자체수입 201,112,522천원(17.09%)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2.06% 낮아졌음.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1,124,214,604	60,510,027	1,184,724,631	1,062,777,233	57,510,542	64,436,855	89.7%	5.4%

2003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1,062,777,233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7% 집행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7,510,54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9%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64,436,85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인데,

○ 지출액 1,062,777,233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유치원 8,489,331천원(0.8%)
- 초등학교 162,062,729천원(15.3%)
- 중 학교 95,424,095천원(9.0%)
- 고등학교 108,015,499천원(10.2%)
- 특수학교 12,982,029천원(1.2%)
- 기타학교 81,102천원(0.0%)
- 평생교육 3,707,199천원(0.3%)
- 급여관리 571,377,840천원(53.8%)
- 복지·후생 46,162,792천원(4.3%)
- 교육위원회 385,861천원(0.0%)
- 선거관리 188,999천원(0.0%)
- 교육청 11,114,318천원(1.1%)
- 지역교육청 6,021,780천원(0.6%)
- 교육지원기관 13,045,463천원(1.2%)
- 지방채상환 23,710,336천원(2.2%)
- 제지출금 7,860천원(0.0%)

○ 다음년도 이월액 57,510,542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치원 1,278,259천원(2.2%)
- 초등학교 28,725,208천원(50.0%)
- 중 학교 11,066,536천원(19.2%)
- 고등학교 12,684,602천원(22.1%)
- 특수학교 1,390,896천원(2.4%)
- 교육청 70,000천원(0.1%)
- 지역교육청 2,295,041천원(4.0%)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 불용액 64,436,855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치원	376,180천원(0.6%)
- 초등학교	11,924,381천원(18.5%)
- 중 학교	2,760,595천원(4.3%)
- 고등학교	5,456,219천원(8.5%)
- 특수학교	506,515천원(0.8%)
- 기타학교	14,836천원(0.0%)
- 평생교육	148,832천원(0.2%)
- 급여관리	20,093,176천원(31.2%)
- 복지·후생	3,815,308천원(5.9%)
- 교육위원회	17,680천원(0.0%)
- 선거관리	23,499천원(0.0%)
- 교육청	1,193,083천원(1.9%)
- 지역교육청	1,008,088천원(1.6%)
- 교육지원기관	839,804천원(1.3%)
- 지방채상환	249,819천원(0.4%)
- 예비비	16,008,840천원(24.8%)

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 불용비율이 5.4%로 '02년도 8.1%보다는 많이 낮아졌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비, 급여 및 복지후생비, 예비비 임.

라. 이월비 결산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9	18,927,931	76	38,582,611	0	0	95	57,510,542	

2003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19건에 18,927,931천원, 사고이월 76건에 38,582,611천원, 총 95건에 57,510,54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건이 감소하고, 금액으로는 2,999,457천원이 감소하였음.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건 명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지출 액	잔 액	비 고
교육감 선거 관리경비	21,957	0	21,957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설치에 따른 선거 관리경비
태풍 피해복구비	75,777	42,185	33,592	영동학생야영장 태풍 "매미" 재해복구비
계	97,734	42,185	55,549	

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03. 11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추가설치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으나 선거경비 집행결과 23,51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액 21,95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것과, 2003. 9. 12~9. 13일 기간 중 태풍 "매미"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복구비로, 금회 제16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채입 대료	18,002	8,652	15,450	11,204	폐교 및 사택 임 대료 미납금
채매 산대	0	456,000	0	456,000	폐교재산(보은 동 정분교) 매각대
수업료	27,802	0	27,802	0	세입금 횡령분
전세권	281,334	0	29,334	252,000	원어민 전세금 외 1
구상권	3,229	0	2,933	296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구상금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급청 여구	7,575	3,310	7,575	3,310	급여청구소송(이자)
대여장학금	33,329,382	6,269,980	3,612,598	35,986,764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계	33,667,324	6,737,942	3,695,692	36,709,574	

채권은 2002년도말 33,667,324천원에서 2003년도중에 6,737,942천원이 발생하고 3,695,692천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36,709,574천원으로 채권의 대부분(98.0%)이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임.

○ 채 무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 감 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 이자	비 고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66,504,000	0	21,401,217	45,102,783	0	재특용자금

채무는 2002년도말 66,504,000천원에서 2003년도중에 21,401,217천원이 소멸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45,102,783천원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 통폐합지원, 학교시설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채(재특용자금) 임.

사. 재산의 결산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2002년도말 현재액	2003년도 증 감		200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1,994,847,003	247,630,667	18,726,328	2,223,751,342	
행정재산	1,952,847,311	243,157,175	13,487,290	2,182,517,196	
잡종재산	41,999,692	4,473,492	5,239,038	41,234,146	

공유재산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228,904,339천원이 증가된 2,223,751,342천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1,952,847,311천원으로 2003년도에 243,157,175천원이 증가되고 13,487,290천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의 현재액은 2,182,517,196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41,999,692천원으로, 2003년도에 4,473,492

천원이 증가되고 5,239,038천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41,234,146천원 임.

○ 물 품

(단위 : 천원)

2002년도말 현재액		2003년도 증 감				2003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6,715	88,968,443	3,242	14,732,407	747	3,297,391	19,210	100,403,459

물품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19,210점에 100,403,459천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 16,715점 88,968,443천원에 비하여 2003년도에 3,242점 14,732,407천원이 증가되고, 747점 3,297,391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의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하에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요예산 편성 시에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 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첨 5)

(제168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4. 6. 1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견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5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4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4년 6월 8일)

○ 제2차 소위원회(2004년 6월 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제안이유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지출 결정 사항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설치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 선거관리경비 납부 요청액 21,957천원과 영동학생야영장 태풍 피해로 인한 시설 재해복구비 75,777천원 임.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03. 9. 30.	21,957	0	21,957	
태풍 재해복구비	'03. 9. 30.	75,777	42,185	33,592	영동학생야영장 태풍 피해복구비
계		97,734	42,185	55,549	

○ 교육감 선거 관리경비 납부

- 2003. 11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경비 납부요청에 의거 당초예산 190,541천원과 예비비 21,957천원 합계 212,498천원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함.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집행결과 23,51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됨에 따라 예비비 지출액 21,95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됨.

○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

- 2003. 9. 12.~9. 13일 기간 중 태풍 「매미」에 의한 집중호우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설 피해를 입은 영동학생야영장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한 것임.

나.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첨 6)

의안번호	제 168 - 3 호
의 결 년 월 일	2004. 6. . (제168회)

결의문 채택의 건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학교 자율적 운영 촉구

제 출 자	고규강 교육위원외 5명
제출년월일	2004. 5. 31.

결의문 채택의 건

-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학교 자율적 운영 촉구

의안 번호	168-3
----------	-------

발의년월일 : 2004. 5. 31.

발 의 자 : 고규장 교육위원외 5명

1. 주 문

-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각급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어,
교육의 수혜자가 교육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고 그리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역별로 제한한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2004. 3. 3자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서,

2004. 5. 7일자로 재차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

에서는 읍·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당초지침을 변경 한 것에 대하여,

첫째,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둘째,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각급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집행청에서는 학부모·학생·학교운영위원 등 교육수혜자의 의견 수렴이 결여된 채 일부 지역학교에 대하여 학습권을 제한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에 저촉된다고 보며,

셋째, 당초 지침에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역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읍·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 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재차 시달한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고,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별로 제한한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청에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임.

3. 결의문(안) : 붙임과 같음

결 의 문

-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학교 자율적 운영 촉구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각급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초·중등교육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2004. 3. 3일자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면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시달 후,

2004. 5. 7일자로 재차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에서는 읍·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당초지침을 변경한 것은,

첫째,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둘째,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각급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집행청에서는 학부모·학생·학교운영위원 등 교육수혜자의 의견 수렴이 결여된 채 일부 지역학교에 대하여 학습권을 제한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에 저촉된다고 보며,

셋째, 당초 지침에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역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읍·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재차 시달한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고,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04. 5. 7일자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 중 지역별로 제한한 금지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 한다.
1.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 및 교육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부모·학생·학교운영위원 등 교육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10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第16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55
II.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59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11
2. 서면답변서	113
IV. 별 책 부 록	
1. 2003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6월 8일 (화요일) 11시 23분

議事日程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3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성영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25분)

●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송대헌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대헌

성영용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6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2
일간으로 하여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
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
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
월 9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3년
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심
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현,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6월 9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6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
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
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먼저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충설

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개요 작은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를 100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00만원 미만은 절사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1)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영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이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옥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이제까지 한번도 역순으로 한 일이 없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저를 지명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전에도 역순으로도 하고 그랬어요.

● 진옥경 위원

그렇게 하셨어도 원칙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영웅

위원장의 직권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은 직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간의 형평성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의 어떤 순서도 저희들이 도표로.....

● 위원장 성영웅

준비가 덜 됐습니까, 그럼.

● 진옥경 위원

아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 위원장 성영웅

준비가 안됐으면 뒤로 하고요.

● 진옥경 위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직권이 아니라 저를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까지 언제나 위원 순서대로 하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의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이제까지 그냥 참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의 역순이 있었을 따름이고 한번 그랬습니다. 그것도 2002년도 청주시교육청인가 감사 때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 위원장 성영웅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개요 10페이지에 세출예산 이월액 부분에서 질

의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기가 언제고 3회 추가경정예산 시기는 언제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2회 추경은 2003년도 10월 24일이 되었고 3회 추경은 2003년도 12월 22일입니다.

● 이기수 위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예산들이 대개 하나도 사용 못하고서 다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통상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모든 사업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불용액 내지는 이월발생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의 예산편성개요를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재원에는 전년도 8월이나 7월경에 국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규모를 배정한 다음에 세수와 기타 재원 규모가 확정되면은 다음연도 초 내지는 2

회 추경에 확정하게 되며 대체로 약간씩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 실사업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회 내지 2회 추경은 통상적 국고의 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가 확정되는 5월경에 총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을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1회 추경은 언제쯤이시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작년도 5월 29일입니다.

● 이기수 위원

음성대소초등학교 교사증축은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지출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5월 달에 추경에 반영한 것을 지출을 못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1회 추경이 5월 달인데, 대소초등학교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출만 안했지만 원인행위는 다 마쳤습니다, 원인행위는.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은 한 겁니까?

추경에서 된 것을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집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계약행위는 이루어지고 년도말에 예산 집행만 안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공사는 진행됐는데 그것만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불용액이 덜 생기게끔 하려면 추경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집행 공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불용액이 덜생기지 이걸 잘못 추정함으로써 불용액이 8.몇%로 해서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도 5.4%.....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2002회계년도는 8.08%였고 금년도에는 약간 줄어들어서 5.4%로 줄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이월액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잘 추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니까 페이지 9 페이지에 전용관계 목은 임의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전용관계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목과 목까지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요것은 예산총칙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산서상으로 총칙에.....

● 이기수 위원

예산서상으로써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총칙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 이기수 위원

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맞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전용이 아니고 예산총칙상에 제6조제2항에 보시면.....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개별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

니고 목간 전용은 교육감님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칙으로다가 교육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승인을 어디다 받아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어느 예산 속에 목의 전용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는냐는 얘기지, 만약 장·관·항·목 중에서 우리가 뭘니까 집행의 최고책임자가 전용할 수 있는 그것이.....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산총칙 6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의 예산은 타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은 목간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이기수 위원

근데 이거는 봉급, 상여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거는 전용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관서운영비하고 민간경상이전비 해서 이걸 전용한 얘기인데 뭘니까 지방교육재정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전용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전용의 문제는 법정과목이 있고요. 그
항 이상의 그 다음에 세항 이하의 행정과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목간의 전용
은 행정과목상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의회승인 사항이나 아
니면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그런.....

● 예산담당 음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원칙은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경직되
게 예산을 운영하면 곤란하니까 그 이외
의 재량성을 부여한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전용이나 이용에 따른 제도를 만들었는데
다만 전용은 세항 내의 행정과목은 전용
을 하되 시설비나 인건비는 다른 데로 못
주고 나머지는 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이라고 했을 때 승
인사항이 세입·세출예산만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
는 예산총칙까지를 승인해 주는 걸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내용에 포괄적으로 왜냐하
면 미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칙내용에

다가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
을 할 수 있다라고 총칙에 규정을 하고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목의 전용은 이견 교
육위원회 승인 안받고도 할 수 있다는 애
기죠?

● 예산담당 음영호

포괄적으로 예산총칙에 포괄적으로 승
인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고 예산운영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의회승인은 미확정 부분이기 때문
에 총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만 사전에 승
인을 받고 운영상 문제가 나올 때
는.....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견 사실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전용문제는 되도록 안하는 게, 이게
어떤 경우는 뭐냐하면 재량을 주는 부분
도 있다고 하겠지만 남용될 수 있는 소지
도 있는 겁니다. 전용말입니다. 그건 어
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
는.....

● 예산담당 음영호

당초의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했다면 모
르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만들 때 미확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시기를 어디에서 결정할 것이냐 또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고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도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최소한 줄여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앞으로 이런 전용은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서게끔 해서 그런 모든 예산은 말입니다. 구체적인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게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앞으로 특별히 전용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100%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예산에서 그런으로써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으므로 해서 전체의 불용액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예비비는 그 성격상 전액이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처리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3회계년도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경비부담금과 그 다음에 영동에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피해 그 두건을 지출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격상 전액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도 2003년도 규모는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면서 다음 재원확보를 위해 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비비에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편성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002년도 회계에는 0.5%이상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003년도에는 자체 실정화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총 예산의 0.5%를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002회계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해보세요.

● 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과거에 재정수요가 불투명하고 이런데에 대한 예산 규모의 0.5%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이기수 위원

없어졌죠.

● 예산담당 음영호

실정에 따라서 계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장님 답변하듯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측이 어려워질 때는 예비비에다가 왕창 집어넣어 놓고서 걱정한 때 그때 그때의 항목에 따라서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구체화됨으로써 말입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이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총예산에 몇% 세워야 된다 이런 지침이 없던 얘기에요.

그러면 이럴 때 예비비가 과다하게 세워 갖고서 전체 예산에 불용액을 많이 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쪽 배분하고서 예

산에 대한 예비비편성을 말입니다. 적게 함으로써 전체 불용액을 줄어나갈 수 있고 이게 100% 보면 얼마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 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160억이라는 과대한 예산을 사장한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의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예비비를 대폭으로 축소해 갖고서 뭘니까 이월금이 적어지게끔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겁니다.

뭘냐하면 이것은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갖고 예산을 사장했다는 결과라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추정해 갖고서 예비비를 적게 편성해서 어느 목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시구요. 다만 그게 예비비가 사장되는 것은 한해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다음연도에 가면 그 예비비는 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결국 161억이라는 걸 예비비를 거의 정확하게 해

서 세운다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그거를 쓸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안해 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 효과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160억이라는 예산을 묶어 놔다가 그대로 넘어가느니 보다는 그걸 적정한 부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특별교부금을 12월달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의회가 안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바로 그냥 의회승인 간주 처리 부분이라고 해서 3-1회를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60억 중에 5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왔는데 의회승인을 받을 수 없어서 예비비에 넣은 것이고 나머지 110억이 순수한 예비비였습니다.

근데 다만 100억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유보하지 않고는 예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

●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이월시키는 것이겠고 사고이월은 그냥 의회승인 없이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명시이월은 한번 이월하고서 두 번 이상 못하죠. 그거는 그렇죠. 명시이월은 두 번까지 가능하죠. 사고이월은.....

● 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다음연도에 쓰기 위해서 썼는데, 그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익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이 가능하고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서 사고이월시키고 익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약간의 유예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엔 명시이월로써 현액을 관리해 주고 거기서 채무확정이 되고 채권이행이 안됐을 때 다시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제도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의회승인 받아 갖고 명시이월 쪽으로 전환시켜 갖고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을 늘여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 승인 받아 그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산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절대 공기 자체가 당해연도에 맞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사전에 예산과 같이 명시이월로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수용시설입니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당해연도에 마치고 그리고서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사고이월시키는 겁니다.

다만, 사고이월 부분도 명시이월시켜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마치고 하다 보니까 채무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명시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채무확정은 전부 됐는데 책무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액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지금 우리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공인 회계사, 도의원 해 갖고서 지금 보면 한 열 분 가까이 아마 이것을 상당한 기간 검토해 갖고서 이 의견서를 낸 걸로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결산검사서를 받은지가 며칠 안되고 해 갖고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세입예산편성에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을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결정액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여 세입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 몇 천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예산으로써 지원된 것을 예산총계에 수입으로 잡지도 않고 그냥 전부 지역교육청에 떠넘겨 주듯이 떼어줘 갖고 그게 그냥 분배된 적이 있어 갖고 제가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총계예산주의원칙에 의해 갖고서 모든 수입은 전부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 세출예산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재산매각수입의 예산편성관계도 이건 총계수입으로 잡지 않은 것 같은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은 봤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요 내용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정분교의 비림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23일날 계약이 체결된 건데 추경 편성 전후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못했고, 우선 4억 5,600만원이 지난 5월 14일 전액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희망자의 재력문제 때문에 연도 내에 그 돈을 계약이 12월 23일날 되어 있고 연도 내에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판단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총계주의원칙을 고수해서 투명성을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 사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체결이 2003년도 12월 23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2003년도 12월달에 계약이 체결 됐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대금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계약체결일로 60일 이내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이기수 위원

60일 내면 12월 23일날 계약은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일 내면 1월달에 받게끔 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2월 한 말씀 됩니다. 그래서 60일이 경과해서 보은교육청의 관계자가 와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해지를 해야 되느냐, 또 이 사람이 지금 재력문제가 본인 수중에 없고 제3자의 자금을 같이 보태가

지고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해당관리과장에게 이게 계약능력과 또 의지를 판단한 후에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해다오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래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까운 시일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약해지 조치를 안하고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해 가면서 본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4억 5,600만원을 지난 5월 14일날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려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어떤 쪽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놈이 이월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얘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3회 추경이 2003년도 12월 22일날 되어 있는데 추경확정된 다음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 이기수 위원

22일날 추경예산이 확정됐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3일 다음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4억 몇천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됐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본예산에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2004

년도 본예산도 교육위원회는 10월 도의회는 12월에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 못된 얘기죠.

지금 늦게 했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4억 몇천이라는 세입은 말입니다. 수입을 잡힐 수 있는 예산이 2003년도도 안잡히고 2004년 본예산에도 지금 안들어 왔는데 4억 몇천이라는 돈은 5월 며칠날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항목에 어디에 있는 돈입니까? 이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2004회계년도의 예산편성도 역시 8월, 9월서부터 해서 최종 12월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추정해서 계약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 이기수 위원

아니 계약금은 처음에 12월 20며칠날.....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계약을 한다면 계약금액이라는 애

기는 됩니까 거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성의만 있으시다든지 하면 대금 납부가 언제됐다고 그래요. 5월 며칠이예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5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5월 14일이라든지 하면 그 전에 거기에 대한 몇 달이 걸리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계약해지를 할 것이냐 또 대금납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타진해서 양쪽에 어떤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얘가지, 지금 4억 몇천이라는 돈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어디 나온 근원도 없는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004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재차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도 2003년도 8월, 9월에 해서 교육위원회 상정시기가 10월입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12월 23일날 최종액이 확정된 것은 도의회를 의미합니다. 도의회에서 12월 23일날 의결됐는데 그 다음날 요것이 계약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중에 되어 있다면 교육위원회에 우리 수정예산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이미 교육위원회 의결이 12월 중에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의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 이기수 위원

과장님 1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먼저 통과가 됐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거기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물론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고서 계약일자하고 말입니다. 대금 들어온 날짜를 한번 서류를 저한테 줘 보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송대헌**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이 자리에서 우리 관계관님들하고 논의하는 뜻은 법적으로 하도록 제도적인 문제도 하나 있지만, 우리 지나간 부분 이미 끝난 부분이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예산수립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데, 지금 방금 이기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느낌은 어떻게 해도 이 자리를 면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감을 답변에서 느낍니다.

잘못된 지적, 부당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어떻다 시기적으로 어떻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면서 어떻게 차후부터 개선책을 논의하는 이런 답변태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 자리만 면해 볼까 하는 그런 답변태도로써는 우리가 이걸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도에 우리가 다가올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나간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같이 인정하

고 개선책이 뭐냐 이렇게 찾아야 할 부분들을, 그저 이 자리만 모면하고자 답변을 중구남방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일어났다가 답변태도도 준비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각자 말이 다릅니다. A라는 사람 다르고 B라는 사람이 다르고 C라는 사람이 달라요. 우리 이런 집행청의 답변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여기 부당하게 되어 있다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내에서 우리가 서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물리적으로 안된다 추경에 기한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자고 듣자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대처 할 것인가 하는 것 목간 전용같은 문제 아까 당연히 하면 안되죠. 아무리 총괄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목간 전용은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것이지 그걸 인정하고 나서 전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통과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런 답변의 자세가 아니고 전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이 언제 오고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160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나중에 뒤늦게 50억이라든가 60억이 뒤늦게 12월 연말에 왔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전 답변은 160억이 전부 다 예비비로 쓴 것처럼 답변하고 마지막에 가서 12월에 넘어왔다는 것이 뒤늦게 나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자세들이 우선 답변을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도에 새로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 그걸 거울삼아서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결산검사의견서에 25쪽 보편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예산운영의 부당한 처분 사고이월 73건, 명시이월 70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27쪽에 본 사안은 2002회계년도에 지적되어 미시정된 사안이라고 적시한 부분입니다. 근데 2002년에 적시하면서 2003년도에도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게 2002년 때도 들은 기억나는데 본청에 입장에서는 집행청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것처럼 들은 기억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 집행청의 생각은 부당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더 추가를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누가 한번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요건 양비론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보편은 절차도 중요하고 합법성을 강조하게 되고 또 감사원 같은데서는 합목적성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데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렇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양비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여기서 이걸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우리 집행청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건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해야 될 것은 명시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 송대현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이게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또 같은 지적이 나올 거라고요. 도의회에서 와 가

지고 2002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2003년도에도 부당하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결산감사에서 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해 가지고 또 나온다고 할 때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결산감사의견서에 되풀이해서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뭔가는 종지부를 하나 찍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상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 근데 감사하는 결산감사입장에서는 아니다 말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하고서 이걸 부당하다 70몇 건이 부당하다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의회하고 관계법률가하고 해서 내년도 우리 결산감사 때는 이 부분이 재론이 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고 나가는데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 간사 송대현

두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페이지 29쪽도 마찬가지로요. 29쪽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경기운영단체 지원경비 집행의 부적정, 우리 예산은 민간경상이 전비에 세웠는데 그게 부적정하고 교육청에 기본운영 업무추진비에 세우는 예산과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

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 사안은 2001년회계년도, 2002년회계년도에 지적되어 미시정된 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와 같이 맥락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결산감사 아무리 지적해도 안고치는 것처럼 너희들은 결산감사에서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것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지적이 부당하게 해석을 해서 지적한 것이냐 이것의 관계관의 내용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결산감사위원님들 의견에 저는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도 많이 했는데 설득이 제대로 안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걸 업무추진비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나 엄격하게 보면 이걸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도 맞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은 그 분들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맞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돈이 없으니까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종 체육회 단체에 필요한 돈이 1,000

만원 있는데 우리가 1,000만원 다 주면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아마 그 분들도 이렇게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아니라고 할겁니다.

그 중에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길을 만든다든지 할 때 한 50만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걸 다른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적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해 결산감사가 오시고 나면 정확하게 그거를 저희들하고 사전에라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송대현**

좋습니다.

국장님 의지 그대로 관철해 주세요. 이거 중지부 찍읍시다.

하나만 더 하고서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36쪽에 회계관리법규 미준수 해서 첫째, 공무원보수 과다 지급 회수 청구여중외 66건하고 둘째, 중복여중 교사중축공사 외 14건 공사대금 과다 지급 내역이 2건에 대한 내역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인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그 내역은 1억 2,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주로 감사결과 회수금 변상금의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의 지적인 취지는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사전 교육이나 연수를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위약금 내지 회수금 변상금이 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전 이런 변상금 나오는 것을 사전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 **간사 송대현**

그런데 공무원보수 과다지급은 왜 생기나요? 그 부분 66건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주로 가족수당에 지급하는데 지급사유의 소멸직위 요런 것을 간과해서 계속 줬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간사 송대현**

아무나 말씀하세요.

공무원보수가 과다지급 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 같은데 그것이 한 건이 아니라 66건이 되거든요. 주로 어떤 부류의 성격이 속하는지 본인은 몰라서 묻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대략적으로 공무원보수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지금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다가 가족간에 부양가족의 사

망, 출생에 관계되는 것은 본인이 신고를 그때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봉급 담당자에게 즉시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수당 관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간사 송대현

과다지급이 되나요? 그럼 신고 안하면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 수당을 타고 있는데 3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신고를 안하고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지급이 됩니다.

● 간사 송대현

계속 지급이 된다. 과다지급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송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후 1시간 정도가 경과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진옥경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성영용

이쪽 먼저하고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 진옥경 위원

참 무원칙합니다.

저는 누가 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아니 역순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되는 게 아니잖아요.

● 진옥경 위원

아니 역순도 이번에.....

● 위원장 성영용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진옥경 위원

아니 저를 납득시켜 주시면 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납득을 어떻게 시킵니까?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를 이쪽 저쪽으로 나누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안하시는 겁니까? 그럼 질의를

● 진옥경 위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저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역순으로

● 위원장 성영용

회의 끝난 뒤에 하시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맨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맨 마지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기수 위원부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송 위원님이 하셨으면 역순으로 가면 김남훈 위원님이 그 다음이시고 고규강 위원님, 제가 마지막이죠.

● 위원장 성영용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에 위원장이 되셔서 마음대로 하세요.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도 원칙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성영용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오늘 할겁니다.

● 위원장 성영용

할 거예요?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성영용

지금 하세요.

● 진옥경 위원

왜 그러는지를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 위원장 성영용

아니 역순으로 해서 하는데 본인이 안한다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줄 알고 나는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 진옥경 위원

아니 역순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까지 굉장히 예외적인 단 한 건에만 역순이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 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 위원장 성영용

아니 역순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역순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만 유독 역순으로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성영용

제 의사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을 도민들이 이해할까요?

● 위원장 성영용

도민까지 여기에 도민이 왜 들어갑니까?

● 진옥경 위원

이것이 도민들에 직접 관련된 교육예산을 지금 결산하는 자리 아닙니까?

● 위원장 성영웅

예산·결산의견을 말씀하시고 질의해서 이것을 승인할 건가 안할 건가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에 도민이 왜 들어가요. 그래 질의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아니 순서를 정하고 이 제반의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특권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절차라는 것을 제기했을 때는 그것을 납득시켜주실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역순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언제 적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충청북도 제4대 교육위원회에서 역순질의회가 몇 차례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저한테 일단 말씀해 주시고, 오늘 와서 이제까지 내내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 위원장 성영웅

위원장 직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진옥경 위원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 위원장 성영웅

아니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질의를 오늘하고자 하는 거니까

● 진옥경 위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이기수 위원부터 역순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엇장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 위원장 성영웅

누가 엇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 진옥경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직권이라니 직권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 위원장 성영웅

위원장 뭐하러 뽑아 났습니까?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납득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 위원장 성영웅

뭐 납득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 진옥경 위원

이제까지 역순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단 한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 위원장 성영용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그거는 제가 맨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
렸습니다.

● 김남훈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 진옥경 위원

제가 준비 안돼서 이렇게 제가 역순을
이의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성영용

사과의식 좀 똑바로 가지십시오.

● 진옥경 위원

똑바로 가진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
금 똑바로 하십시오.

● 위원장 성영용

가만히 계세요.

● 진옥경 위원

직권이라뇨. 그게 무슨 직권입니까? 그
것은 마음대로입니다. 아무런 원칙이 없
는 것이죠.

지금 소위원회 운영을 이제까지 역순으
로 한 일이 단 몇 차례밖에 없고 그것도
위원들 간에 합의 하에서 그것이 역순이
이루어진 것은 있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
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

해서 저를 납득시켜 보세요.

도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야
기하실 것 같아요. 똑바로 하세요. 위원
장님

● 위원장 성영용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 진옥경 위원

그런 직권은 없습니다. 직권이 왜 필요
합니까? 민주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소위원회가 역순으
로 된 적이 극히 예외적이고 그것도 위원
간에 합의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와서 저한테 일말
의 통고도 없고 그간의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안시키고서 그것이 직권
입니까?

● 위원장 성영용

그래요.

● 진옥경 위원

그것은 엇장수 마음대로라는 말밖에 저
는 통하지 않습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또 징계해 보세요. 위원 모독입니까? 이
것이 저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사과의식을 좀 똑바로 가지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두분 위원님들이 전부 제가 메모한 질문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조 1,242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원만히 집행하신 두분 국장님과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 결산심사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월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액수가 575억 1,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도 그만큼 이월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어떻게 지금 비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우선 연도별로 이월액의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2003회계년도의 경우에는 4.9%입니다. 2002회계년도의 경우에는 5.3% 그리고 2001년도의 경우에는 9.0%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경우에는 5.5%요 추계를 비교한다면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도 자연히 많아지는 정비례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또는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수립상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월금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2003년도 마지막 추계에 한 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걸 2004년도 본예산에 편입한다면 이런 이월된 사태가 좀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절대적으로 전액 이월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원칙인데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데, 특히 사업이 대형사업 같은 것이 많을수록 보편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자연히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자금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편은 또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거를 전혀 줄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거기를 보면은 명시 이월이 됐던 사고이월이 됐던 거기에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여기 추경 때문에 뭐는 기간부족이니 뭐니 쪽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월을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이월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겠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획에 치밀한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것도 이기수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비비예산이 161억 700만원중 사용액이 9,800만원으로 불

용액이 160억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육사업에 그만큼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161억원중 추가로다가 교육부에서 50억이 와서 실제로는 110억정도 밖에 예비비를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비공식 석상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10억이 됐던 160억이 됐던 이 예비비를 갖다가 책정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서 어떠한 목적으로다 예비비를 이렇게 세웠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을 전액 세출에 계상을 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함이 원칙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성질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염두에 두고 계상하게 됩니다.

특히 160억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서 한 50억정도 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10억정도인데 예비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해사업비에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비비 책정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집행액수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2003년, 2002년 두 해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3년은 지금 나왔고 2002년도는 예비비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2001년도하고, 2001년도에 얼마 정도 지불이 됐어요? 집행이 됐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현재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확보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전년도 과거에 예비비가 지출된 유형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비비규모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집행된 예비비 집행내역이 예를 들어서 50억이었다든지 100억정도가 계속 들어갔다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비비를 책정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예산을 수립했을 적에 예비비분야를 줄이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데 염두해 두고 저희가 예비비 확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있다가 별도로 2001년, 2002년 예비비 집행상황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 김남훈 위원

가지고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예비비 예산은 2002년도에 300억, 2001년에 273억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비비를 집행한 금액, 집행액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2001년도에는 5억 2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16억 1,700만원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2001년도에 270억을 세우셨다고 하셨고 2002년도에 300억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2001년도 270억 대비 5억원 그리고 2002년도 300억 대비 16억 그리고 2003년도 161억 대비 9,000만원 이렇게 밖에 예비비가 지출 안됐어요.

그렇다면 예산수립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교육 사업에 지출했다라면 예산에 다만 적은 예산에 도움이 됐을텐데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사업이 늦어지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300억하다가 그 다음에 160억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데 예비비가 160억이면 160억 고정되게 편성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한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못쓴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치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을 해놨다가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연도에는 예비비 안하고 그냥 했다 다음연도에 가서 예비비를 또 넣을 경우가 있어 갖고 예비비를 100억이든 200억이든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연도에는.....

● 김남훈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규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분량의 결산서를 작성하느라 애쓰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결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2003년도 결산중 눈에 띄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62억원으로 전년도 918억원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점과, 시설사업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월비 결산에 있어서도 총 95건 57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건 29억원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집행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89.7%로 전년도 86.7%에 비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는 집행청에서 그만큼 노력한 부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48쪽입니다. 관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9,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은 87억 7,507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정교부

가 있어야만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다면 교부액이 내시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수납액과 9,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우선 특별교부금 9,200만원 감소한 사유는 남신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을 신축할 때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11월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규모를 구두로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교육위원회 회기에 맞추어서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해서 확정을 해 주셨는데 교부액은 실제로 2003년 12월 16일날 확정 통보되었는데 그 차액이 9,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방교육양여금 수납액이 87억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세의 세수부족으로 해서 감소가 됐는데 이 부족금 87억원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보증을 받았습니다.

● 고규강 위원

다음 세입·세출 결산개요 4쪽을 봐 주

십시오.

세입 총 미수납액 4억 6,720만원 중에 보은 삼산초 동정분교 매각대금 4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51쪽 미수납 사유를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자는 누구이며 공개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유, 미수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계약불이행 및 분쟁발생에 대비한 손실예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매각 우선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미수납 되어서 아까 이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2004년도 5월 14일날 납부한 내용인데요.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3월 27일날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의결해서 그동안에 입찰을 1차를 7월 19일날 했습니다만 한명만 응찰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공고 후에 9월 2일날 2차 공고를 할 때 역시 한명만 응찰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계약자와 수의시담을 거쳐서 10월 2일날 계약체결 했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12월 2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 다음 결산서 부속서류 53쪽 성질별 불용액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자본지출경비에서 2,056만원이었는데 비해 물건비에서 4,116만원으로 특별 사업편성 내역을 볼 때 물건비라 함은 관서운영비, 여비, 정액업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용역비, 교육위원회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등인데 2002년도 결산시에도 물건비에서 계획변경·취소된 사업은 없었는데 2003년도 결산에서 계획변경·취소된 사업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물건비에서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영재교육평가 자료를 개발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요계 취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계획변경되어 있고, 역시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2차 시험일정이 당초에 2003년 12월로 해서 2003회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요것이 계획변경되어서 2004년도 1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계획자체가 년도가 바뀌어서 취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 고규강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16쪽을 봐주세요. 교과서 무상지원 예산현액이 65억 7,915만원, 결산액이 52억 7,283만원

으로 13억 6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비율로 볼 때 근 20%에 달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 불용액이 13억 632만 3,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과서대금은 3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같으면 2002년도, 2004년도까지 3개년 동안 걸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억의 불용액이 생긴 요인은 인상률 인하가 19.3%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억 2,7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재활용을 9만 8,000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억정도 그 다음에 학생수가 2,75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7,700해서 13억 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고규강 위원

감소되는 인원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년 계획해 가지고 학생수가 잡혀 있으니까 2,000명이나 착오가 졌어요?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2,751명이 됐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행정상 치밀한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2,000명, 100명, 200명도 아니고 2,700명이나 입학생수가 년도별로 이렇게 모든 게 계획이 잡히는데.....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그 대신에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재 활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가피하게 감소되는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고규강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49쪽 세출 총 지급금액은 1조 651억 9,792만원으로 이중 다시 반납 받은 금액이 24억 2,06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 과·오납에 따른 반환도 아니고 정당한 지출 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시 환수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전체적으로 24억원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우선 개개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학기관에 대한 정산결과 반납액이 주로 시설비로 관련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요 금액이 16억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선거비용으로 2,3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정산결과 반납액이 역시 전액 반납이 되어서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관련 집행잔액이 1,983만원 그리고 일상경비나 학력평가, 각종 연수, 학생증식지원 이런데에 국고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게 24억?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전체적인 게 사학기관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야영장에 2002년서부터 2003년 투자한 것을 보면 10억씩 되어 있습니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투자액과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10억을 투자하는데 해마다 과연 진천야영장의 교육적인 효과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 교육적인 효과니까 저기 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신문 지상에도 나오지만 우리 야영을 하는 목적 교육적인 목적을 학교에서도 알고 우

리고육청에서도 알고 한데 그 사실에 나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지금 퇴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락위주로 그러면 우리가 야영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야영활동이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야영장을 진천야영장을 보면 4월에서 7월까지 운영을 하고 인건비가 6억, 7억 보통 6억 5,000이 평균적으로 나가는데 우리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이면 4개월인데 4개월간 운영을 하고 나머지 달은 쉬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도의원들이 이걸 매각을 하자 효과가 없으니까 이래서 제가 사전에 그 정보를 듣고 사체과장님한테 이걸 대비를 해야 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 타 시·도 것을 전부 뽑았습니다. 뽑아서 보니까 타 시·도는 몇 군데는 직속에서 우리교육청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야영장에 다 편성을 하고 거기 운영을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야영장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이 편하고자 방학 때나 휴일이나 10월이나 9월에 하지를 않습니다. 대개 7월까지 그런 걸 파악해서 가지고 막대한 시설을 들였고 또한 연 10억이라는 크다면 큰돈이 지출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

고 방치한 사실 이런 것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도의원들이 지적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이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직무에 있어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29명이라는 숫자가 8개월간 놓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도교육청 당국이 어떤 모습으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건가 시설만 자꾸만 늘이면 되는 건가 교육적인 효과를 늘리지 않고, 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거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편하려고 그러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가 편하게 밥도 학생들이 직접 밥을 해먹고 거기에서 극기훈련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기와의 차이점이 뭔가 교육적인 효과는 뭔가 이렇게 야영을 해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든 분석을 통해서 그걸 운영을 했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타 시·도 것을 전부 뽑아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방치했다는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못된 사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안하시려면 서면으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요거를 자세히 적어서 가지고 저한테 몇 달 후에도

좋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영웅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심사의 순번에 관련해서 사전에 저한테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나치게 옛장수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대신 거기에 관련된 용어는 자의적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은.....

● 위원장 성영웅

잠깐만요. 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 간사 송대현

위원장님 찬성합니다.
아까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삭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

에 삭제요구를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성영웅

동의 있으십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두분이 삭제부분도 있고 또 본의아니게끔 서로 간에 오고간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하고 진 위원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의 원활한 회의진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게 일선에서 받아들일 것 같은데 두분이 서로 언쟁부분 말입니다.

아니 옛장사 부분만 그 언어만이 아니고 그 중간에 서로간에 회의진행과 관계 없는 여타 부분도 합의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진옥경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이 진실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지을 의사는 없고 다만 그 용어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두분이 위원장님과.....

● 위원장 성영웅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진 위원님

● 진옥경 위원

글쎄 제가 이기수 위원님 말씀은 요지는 알겠는데 전체를 삭제할 의사가 없고 단지 그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해 주길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그러면 전체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전체를 이 사안이 아까 오고간 말씀은 본 우리가 소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진행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용어도 내버려두십시오.

● 이기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두 위원장님과 진 위원 사이에 오고간 말씀은 본인들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감정이 어린 그런 표현으로써 서로 오고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우리가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진 위원이 뜻하지 않으시다든지 하면 순번에 대한 얘기에 대한 이의제기 부분과 지금 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을 그 부분만 남겨두시고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는.....

● 위원장 성영용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은 고규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거죠.

● 고규강 위원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 위원장 성영용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걸 원하는 거죠.

● 진옥경 위원

저는 그럴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 고규강 위원

합의할 의사가 없다니까 우리는 동의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달라 이겁니다.

● 위원장 성영용

알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1조가 넘은지도 여러 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큰살림 맡아서 각 과별로 이렇게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비해서 세입·세출 결산작성지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들을 위원들에게 배포해 준 것은 작년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도 이미 위원들 지적하신 분이 계시지만 애를 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불용액을 무조건 감소시킨다는 취지에서 쓸모없이 과대편성하는 부분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인가에 대한 점검이 다시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지적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는 것들은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빼겠습니다.

우선 결산심의를 거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미스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책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최근 5년 동안 있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결산결과에 따라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여부는 지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자료를 만들어서 최근 5년

간 있는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결산의 심의의결이죠. 어쨌든 승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이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부분이 일단 적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관련공무원 문책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작년 제작년의 사례들이 되풀이되는 양상으로 가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또한 교육위원이 결산심의를 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나마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료들을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9월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때 초빙된 강사에 따르면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예·결산심의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구조 속에서라도 교육위원이 결산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심사위원 선임권이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이중 구조가 갖는 모순의

해결은 뒤로 미루지언정 현행 체제 속에서도 충청북도교육 및 학예의 부문을 심의의결하는 도교육위원회는 결산심사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따라서 2003년 6월 열린 2002년도 도교육청 결산 심의의결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심사위원 중에 도교육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청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청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답변에서 도교육청 결산심사시 도교육위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이 매년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실제로 반영되거나 수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심사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단 한명의 교육위원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의 수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관간에 영역다툼이나 갈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행의 모순체제 속에서라도 최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다는 차원에서 상호 의견접근을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결산심사에 교육위원이 배제되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도교육위원회 결산심의를 결산심사위원회가 기작성한 결산심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되풀이하여 부연 설명하는 부연 질의하는 것 외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5월 행정질의시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주장하시면서 답변하셨던 집행청 차원에서 작년 기획관리국장님의 답변이후에 결산심사위원 중에 도교육위원이 포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노력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이 없으십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와 가지고서는 도교육위원님들이 참석을 해달라고 그쪽에다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산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참여케 해달라라고 하기 조금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지금 전임 국장

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는 그쪽에 도의회쪽에다가 우리가 교육위원님들을 참석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 진옥경 위원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학예에 관련한 결산을 심의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교육위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의원들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 진옥경 위원

그래서 결산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지금 심사위원의 선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라든지 이런데 보면 감사위원회 선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수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자치가 그렇게 중요하시고 교육위원들이 어떤 역할이 전문성이라고

이렇게 선언만 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청에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교육청은 결산검사를 받는 피검사기관입니다. 결산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저렇게 해달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교육위원이 거기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지 집행청인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을 참석시켜달라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현행에 그러면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 총무과장 안용균

한 방법을 말씀드리다면 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협의, 제가 협의를 제안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저는 교육자치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중립적인 어떤 결산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집행청과 의회사이에 중립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위원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중립성이라면 교육위원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있을 때에 중립성이 지켜진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집행청이 만약에 이 교육자치를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의 중심에 그런 분리독립을 정말 주장하신다면은 명실상부하시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모순 점들을 개선하시는 것들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시정요구 하실 루트를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4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결산심사 이후 교육위원들의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육위원회의 결산심사위원 포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상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공개질의에 대해서 간담회자리라도 좋으니 그간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공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영웅

진 위원님 예산·결산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네, 이게 결산심사위원회의 어떤 결산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중에서 각급 학교회계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지금 도교육위원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학교회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학교회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집을 해서 예·결산서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제가 올초에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받아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 이것은 교육청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운영 학교회계 부분도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양이나 단가가 어떤지 숫자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냥 액수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지금 이 결산서도 그런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산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적인 부분에 대해 쓰는 이런 학교예산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공개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청에서 학교회계도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영웅

집행청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진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의 어떤 파트 또는 학부모가 바라는 어떤 계정 그런 걸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쉬울 것 같습

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단가와 개수를 왜 표시하지 않는 결산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통상 단가같은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회계에 대한 감사는 통상 정기감사를 할 적에 학교회계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왜 단가를 통상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학부모들은 그 점을 굉장히 배구공 하나가 얼마인지 그것이 30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결산서에 학부모들에게 배포하는 특히 학교결산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에게 조차도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그런지.

● 진옥경 위원

어느 학교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개의 학교를 거의 다 제가 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올해 결산서 모교등학교 결산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난 행정질의 때인

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돈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단 1원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알고 싶어서 저에게만 그런 것들이 문제로 저에게 제기되는 것인지 집행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실 의향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지금 학교회계에 대해서 예·결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일차적으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학부모대표가 대표권 있는 사람들이 심의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그것이 본인이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는 현재 학부모감사청구제도를 현재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진 위원님이 학교장이라고 생각하실 때 모든 학부모님들이 매일 와서 장부나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할 때 학교운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권한이 있는 부서 사전에 교무회의라든지 학부모운영위원회 다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걸 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감사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학부모 측에서 미진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국가단위에서 학부모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려고 현재 여론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모든 것을 열람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게 때문에 자치나 자유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6월 30일날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면 뒤죽박죽 학교예산회계제도 곁핥기식 결산심의회라는 큰 제목하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수지역입니다. 6억 6,000만원 상당 1년치 회계결산이 1시간

만에 처리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라고 여기에서 예외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것은 현재 상호신의에 의해서 뽑아준 대표성에 의해서 믿음을 주면은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옥경 위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갇아버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실있는 결산심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만이라도 충분한 자료를 지금 우리 결산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대한 이들한테는 모든 자료들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결산심사 소위원들은 그 자료들을 관련 증빙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고 곁핥기식 결산심의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대한 어떤 지도나 교육부분에서 여전히 그것이 여러 사람 학부모가 갔을 때 학교에 혼란이 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셔서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학교운영을 번거롭게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알권리 차원에서의 어떤 열린 행정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감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 무슨 감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 관련자료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쭙보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구공을 당초예산에는 30개씩 사겠다고 1,000원 주고 30개씩 사겠다고 했고 나중에 실제 집행할 때 보면 단가가 올라서 1,200원 주고 살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개수는 줄겠죠. 그런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견주어 가지고 결산서에 표시하기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집행을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 진옥경 위원

그거는 교육청 차원의 이야기이고 제 말씀은 학교운영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들은 관련 증빙자료들을 전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학교도 크게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심사소위원들은 관련자료들을 요구하지 않나요?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주일동안 검사하셨다면서요?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아니 지금 학교회계를 말씀하시는데 학교회계운영위원회에서 할 때에 해당학교에서 결산자료를 안내놓은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결산자료인데 결산서죠. 결산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증빙은 학부모가 요구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기 어려워요.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아니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 안되죠. 본인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 위원장 성영용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단위학교에 관한 것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단위학교 어느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입니다. 곁핼기식 결산심의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실있는 결산심의를 유도하시겠습니까?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전국적으로 어떤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곁핼기식 결산감사가 된다는데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사안인데 그건 열심히 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고 부실하게 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통계자료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진옥경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았죠.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그러면 그렇게 곁핼기식 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 진옥경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어도 소위원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도한 부분은 그 여러 개의 소위원 중에 한 개라도 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가 그 정도를 지금 조사해서 저

한테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심사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하신 일이 없는 것이죠.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때 그걸 제출하지 않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 심의의결권이 있는 분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특정 사안을 보자고 하는데 그걸 안보여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만약에 민원성의 그런 이야기들이 오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 오더라도 학부모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마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민원사항은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신분을 안밝히고서 학교의 재정현황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 진옥경 위원

아니 본인이 도교육청에 했을 때 도교육청이 본인에 대한 어떤 신분을 학교측에는 말씀해 주지 말란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저는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파악이 안된 사람의 민원을 저희들도 학교에다 요구한다는 건 저희들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은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 위원장 성영웅

진 위원님 하실 게 많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숙개한지 한 1시간이 지났습니다.

● 진옥경 위원

잠깐만 더하면 됩니다.

또한 경남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학교 예산 10수억원이 남아도 학교발전기금 거둔다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이것은 마산, 진주지역이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의 현황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각급 학교의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학교운영회계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책

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결산과정 까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방비로 받아 온 것을 심의검토해 주고 결산까지 해 주시는 것은 지방의회에다 맡기고 또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행·재정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감사나 기타의 직무기능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운영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결산서를 받고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과도한 불용액이 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도내 모든 학교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초·중학교에 관련한 결산서나 예산서를 다 받아 보십니까?

● 예산담당 음영호

예. 받습니다.

● 진옥경 위원

다 받아 보세요.

● 예산담당 음영호

예. 결산은 받고 예산서는 당초 것만 받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큼 학교회계에서 남고 있는지는 다 파악할 수 있으시겠네요?

● 예산담당 음영호

네.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더라는 얘기는 우리가 표준교육비를 준 거에서 남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다만 외형만 보고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수익자부담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에는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이듬해로 넘어가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불용액이 많더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학교발전기금은 여전히 거두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회계는 이렇게 남는데

● 예산담당 음영호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기탁하는 분의 자의에 의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강요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자의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현황을 알고서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른 채 프로젝션TV가 있는데 또 다시 나는 프로젝션TV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것에 대한 학교예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학교발전기금이 거처진다는 것도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 예산담당 음영호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 말고 저 나름대로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도내 학교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학교예산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살피시고 학교발전기금이 과도하게 거처지는 학교의 사례 이런 것들도 조사하셔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제가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원에서부터 학교회계운영

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우수한 기관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감사를 받으시고 칭찬 받으셨습니까?

● 예산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다면 저의 우려가 기우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음 선생님께서 당부드린 이 부분을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은 다른 학부모님들을 통해서도 저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해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하고 틀려가지고 사실은 어느 기관이든지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또 늦게 와 갖고 제때 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건비는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렇게 하고 또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원 미확보로 인해 사고결원발생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기준호봉하고 실제호봉하고 차액이 있어 가지고 남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원 명예퇴직자를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10억 가까이 남고 또 일용직 인건비 같은 경우도 남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이 한 239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네. 그렇습니까?

일용직에 대한 처우개선들도 요구가 높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언젠가 2002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2003년도에 개선되었다 조금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마다의 어떤 잉여부분들을 계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처우개선에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아마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각 시·도별로 다릅니다. 이것이 강원도라든지 인근의 충남이라든지 기본 책정액수가 받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 부분에서 낫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인건비의 어떤 이런 과다한 과다라기보다 넉넉하게 책정하고 남은 것이 해마다 이것이 축적된다면 이것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처우개선 쪽으로 이것들을 전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결산심사에 대한 조예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자인하는 바고 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동료위원들 중에는 조예가 깊은 분도 계시고 해서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인건비 부분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간업무계획을 지난 6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받아보니까 여기에도 호봉에 관련한 조정을 서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건비 소요자료 검토가 기획관리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03년도 이것을 인건비가 얼마라고 총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오게 된 그러니까 산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곱셈하고 덧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이고 각급 호봉에 해당하는 인원은 또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이고 비정규직이나 행정직은 몇 명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통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곱셈을 해 가지고 이 액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2002년도 것 지나간 것입니다.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 제가 내년도도 결산심사를 해야되는데 2003년도의 그러니까 2004년도도 되겠죠. 지금 현행 파악하고 있는 모든 인원수 교육공무원이나 별정직이나 비정규직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 통계자료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충북교육통계연감인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어떤 산식을 거쳐서 인건비 이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것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2002년도 것은 그러니까 2002년도에 마련하신 2003년도죠. 그 관련자료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저희가 통계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진옥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께서 자꾸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체예산의 60%이상 다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여기 다른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결산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앙의 국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다 결산이 중요하니까 검사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피드백해서 다음연도에 잘 반영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더 넓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20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권입니다.

2003년도에는 절감계획이 관서운영비에서 61억 그 다음에 여비에서 14억, 업무추진비에서 9억 4,700 해서 86억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제가 질의한 사항은 부서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통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물론 부서별로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총괄은 기획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그럼 예산절감계획과 대비해서 절감실적은 몇%나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100%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10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확실한 수치를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영용

부서별로 되어 있으면 예산절감을 잘한 부서는 한번 표창한 것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하고 주문합니다.

●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예. 좋습니다.

다음 23쪽에 초등학교 세출결산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가 2,7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취소발생 사유가 어떤 건지 또 중학교에 마찬가지로 1,271만 6,000원도 마찬가지로 취소된 사유가 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계획변경 취소사유는 영재교육 평가자료를 당초에 발간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취소되었고, 군서 초등학교의 사유지를 매입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그 과정에서 국유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중에 매입의 필요성이 없었고, 또 일부분은 소유주가 사망하고 자손의 소재가 불명해서 소유주 명의의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등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중학교 부분은 진천도서관의 경우입니다. 개축인데 바닥상태가 개축대상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사후진단이 되어서 그 계획을 중간변경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이런 게 취소되지 않고 사전에 확실한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그리고 또 지급사유 미발생된 것 지금 말씀하셔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평생교육과 또 37쪽에 급여관리결산해서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로 운영된 사유중에 기준호봉미달은 예산도 절감된 것 같아서 이해는 가는데 정원을 미달되게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그 차액은 중앙도서관의 공익요원 3명을 배정받기로 당초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병무청과의 협의과정에서 3명을 결원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차액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성영웅

교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또 한 가지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결원분입니다. 아까도 다른 과정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원이 당초 예정보다 171명, 일반직이 22명 이게 미달 운

영했는데 이것은 순수미달이라기보다는 초등교원의 경우에 부족인원을 기간제교원으로 대체 임용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호봉의 차액으로 인한 그런 것이고 또 결원이후에 재임용까지의 순수한 정원미달 그런 것도 포함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성영웅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사업의 불용액이 1억 3,203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21.6%로 거의 예산액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77쪽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사업의 불용액이 3억 1,974만원으로써 예산 대비 21.2%로 마찬가지로 한 5분의 1씩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야 할 형편인데 예산을 많이 남기고도 학력신장이나 이 부분에 충분히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력신장지원 불용액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제히 평가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한 후에 결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처리를 평가원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

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시·도별로 표집한 부분만 채점해 주고 나머지는 채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점해서 결과 처리하는데 표집 이외의 분에 해당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신장지원액의 불용액 3억 400만원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학력제고를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액수는 100% 다 지출이 다 됐습니다.

다만, 고등학교학생 진로지도 설명회하고 고등학교 학력고사 2건에 관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진로지도 설명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장소를 대여하고 또 관련된 강사를 초청을 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대여료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중앙에서 모셔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 도에도 그런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발굴이 되고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있어서 외부 강사를 활용하지 않은 내용이 고등학교 진로지도 설명회에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고사와 관련된 3억원에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1,2,3학년 오늘도 고등학교 1,2학년 학력평가가 있

습니다마는, 연간 8번 내지 9번 실시되는 학력평가계획을 당초에는 시·도교육청에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지침에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시·도별로 모두 책정을 했는데 그 횟수 중에서 시·도교육청끼리 연합해서 하는 학력고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몇 개만 시·도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평가원에서 모두 출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3,000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지출된 것은 1억 2,700밖에는 지출이 안돼서 거기에서 연말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성명용

또 같은 맥락에서 69쪽에 초등학교 학생증식지원을 위한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액이 5,518만원이고 73쪽에 중학교가 60만원, 82쪽에 고등학교가 6,4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결식학생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할 때 전액을 다 써도 모자랄텐데 결식아동 증식지원에 이래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액을 전액 지출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한 사유는 뭘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 질문을 드릴테니까 조금 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속서류 54쪽에서 56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국고보조금사업 중 사립유치원 교재·교구구입 등 3건의 사업에서 불용액이 310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국고로 반납을 해야되죠. 국고로 반납해야죠.

그러면 국고로 반납하기 이전에 흡연교육이나 이런 게 우리 상당히 많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부작용관계가 심각한 형편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학생들의 건강 및 또 건강지도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예산마저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국고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사립학교 유치원 교재·교구구입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정직하게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35만원인데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된 거고 흡연예방교육은 예산 현액 자체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 세입이 206만 3,000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반납한 것이 아니고 예산액 대 결산을 하다보니까 부기사항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206만 3,000원이 세입에서 감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그러면 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예산담당 음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예산 대비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실지로 세입이 감돼 가지고 206만 3,000원이 감돼 가지고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자체가 그래서 예산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냥 운영을 했구요.

실제로 국고가 206만 3,000원이 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만큼 축소를 시킨 겁니다.

내용을 보시기에는 예산 현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지를 맞춰 가지고 따지면 206만 3,000원이 양쪽에서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결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는 좀 뭐한데 그런데 내용 자체는 206만 3,000원씩 양쪽에서 다 빠져나간 겁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이해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요 부분 다시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그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57에서 58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에서 충북 수영연맹 등에 보조하는 각종 체육대회지원금 등 9건의 사업에서 8,5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액수가 적정한지 왜 불용액까지 생기면서 이래 많이 해야 되는지 만일 이만치 쓰지 못하면 감액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법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당초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받았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하

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총 금액으로는 많은데요. 체육과 같은 경우에 경기단체 한 29개 단체를 지원을 해 주면서 총액을 주지 않고 일정 부분만 우리가 부담해도 큰 부담이 없는 부분 그런 거를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것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적절하게 2004년도 예산도 잘 뒀겠습니다만 올해 이들 기관한테 지원할 예산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예.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영용

아까 결식학생 부분은 답이 아직 안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 교육국장 김전원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단, 향후 결식학생에 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금액이 남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어려운 아이들 급식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영용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적극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현,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0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 별책부록

- ▶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별책 1)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6. .

위원장 성영용 成永龍

(별첨 1)

豫算·決算小委員會 議事日程(案)

第16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04. 6. 8. (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4. 6. 9. (수) 11: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별첨 2)

서 면 답 변 서

1. 삼산초 동정분교장 매각추진 현황(이기수 위원)
2. 충북학생종합수련원 운영현황과 타시도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고규강 위원)
3. 인건비 편성 관련 자료(진옥경 위원)
4. 2003년도 중식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성영용 위원)
5. 2003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
2004년도 민간단체 예산편성현황(성영용 위원)

이기수 위원

삼산초 동정분교장 매각추진 현황

1. 재산현황

- 소재지 : 보은군 수한면 20-1
- 부지면적 : 9,776㎡
- 건물면적 : 1,393.3㎡

2. 추진경과

- 분교장 매입 의사 표시
 - 요구시기 : 2002. 12.
 - 희망자 : 허유(2000. 6. 19 - 2004. 5. 13까지 대부중인 자)
 - 매입목적 : 사단법인 비림원(박물관) 운영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03. 3. 27(원안 가결)
- 감정평가 : 2003. 4. 30
- 입찰 : 2003. 7. 19(1명 응찰 → 유찰)
- 재입찰 : 2003. 9. 02(")
- 수의계약 체결 통보 : 2003. 10. 02(허유)
- 계약체결 : 2003. 12. 23(계약금액 456,000,000원)
- 납부기한 : 2004. 2. 20
- 납부득려 : 2004. 3. 2 / 3. 20 / 4. 9
- 납부완료 : 2004. 5. 14(위약금 연체료 : 11,393,000원 포함)

3. 예산편성 현황

예산명	확정일자	
	교육위원회	도의회
2003년 제3회 추경	2003. 12. 04	2003. 12. 22
2004년 본예산	2003. 11. 01	2003. 12. 15
2004년 제1회 추경	2004. 05. 19	2004. 05. 28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고 규 강	소 속	교육위원회
------	-------	-----	-------

□ 질문요지

- 충북학생종합수련원(진천시설) 운영 현황
- 타시도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 현황
 1.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수련원
 2.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3. 인천광역시 학생종합수련원
 4.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5.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6. 강원도 학생수련원
 7.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8. 전라북도 학생교육원
 9. 전라남도 학생종합교육원
 10. 경상북도 화랑교육원
 11. 경상남도 학생교육원

□ 답변내용

“교육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진천)

1. 일반현황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
- 전화 : (043) 534-3623, Fax (043) 534-3625
- 부지면적 : 130,624m² ○ 건물면적 : 3,913m²

2.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교 전 문 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파견교사	사 설 관 리 등	합 계
진천	1	·	4	3	12	4	(1)	25(1)

※ ()안은 일용직으로 합계에 포함

3. 2004년도 충북학생종합수련원 예산현황(진천)

(단위 : 천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교육행정	교육지원 기 관	지원기관 운 영	학생수련 지 원	교육사업비	관서운영비	102,468
					여비	1,650
					업무추진비	3,000
					보상금	3,300
					자산취득비	4,095
			지원기관 부서운영비	기본운영비	관서운영비	137,717
					여비	17,360
					정액업무비	9,720
					업무추진비	7,776
					자산취득비	2,250
		지원기관 시 설	지원기관 시 설	기타시설 사 업 비	시설비	24,820
합계						314,156

4. 2004년도 야영수련계획

구분 순	학 교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학 생	교 사	
1	충 주 중	5. 17 ~ 5. 19	936	48	
2	제천디지털고	5. 19 ~ 5. 21	486	21	
3	청주기계공고	5. 27 ~ 5. 29	1,290	42	
4	용 천 초	5. 31 ~ 6. 2	987	33	
5	탄 금 중	6. 2 ~ 6. 4	954	45	
6	상 산 초	6. 8 ~ 6. 9	478	27	
7	서 원 고	6. 10 ~ 6. 12	1,143	45	
8	모 충 초	6. 14 ~ 6. 16	1,209	30	
9	봉 명 초	6. 17 ~ 6. 19	1,275	39	
10	단 양 고	6. 21 ~ 6. 23	495	21	
11	옥 산 초	6. 23 ~ 6. 24	580	22	
12	부 강 중	6. 24 ~ 6. 26	276	12	
13	백 곡 중	6. 24 ~ 6. 26	150	24	
14	한 천 초	6. 28 ~ 6. 29	342	18	
15	남 신 초	6. 28 ~ 6. 30	291	9	
16	삼 수 초	6. 30 ~ 7. 2	480	18	
17	부 강 초	6. 30 ~ 7. 2	921	39	
18	남 신 초	7. 5 ~ 7. 6	460	14	
19	회 인 초	7. 8 ~ 7. 9	66	12	
20	회 남 초	7. 8 ~ 7. 9	34	6	
21	백 곡 초	7. 8 ~ 7. 9	100	10	
22	옥 동 초	7. 8 ~ 7. 9	76	8	
23	문 백 초	7. 8 ~ 7. 9	162	6	
24	소 수 초	7. 8 ~ 7. 9	84	10	
25	서 춘 초	7. 12 ~ 7. 14	126	12	
26	각 리 초	7. 12 ~ 7. 14	84	12	
27	능 산 초	7. 12 ~ 7. 14	54	39	
28	대 장 초	7. 12 ~ 7. 14	114	12	
29	청 남 초	7. 12 ~ 7. 14	582	18	
30	백 운 초	7. 15 ~ 7. 16	118	4	
31	학 성 초	7. 15 ~ 7. 16	74	8	
32	성 암 초	7. 15 ~ 7. 16	86	8	
33	구 정 초	7. 15 ~ 7. 16	70	8	
34	능 암 초	7. 15 ~ 7. 16	40	6	
계			14,623	686	

5. 2004년도 생활관 효 체험학습 계획

기수	교육대상교	교육기간	계획인원(명)		비고
			학교별인원	기별인원	
1	진천고	3. 29	197명 (남 94, 여 103)	33	1일체험(2학년)
2		3. 30		33	
3		3. 31		33	
4		4. 1		33	
5		4. 2		33	
6		4. 6		32	
7	부강공고	4. 12 ~ 4. 14	83명	41	2박 3일(3학년)
8		4. 19 ~ 4. 21		42	
9	의림공고	5. 10 ~ 5. 12	40명	40	2박 3일(2학년)
10	전산기계고	5. 17 ~ 5. 19	23명	23	2박 3일(2학년)
11	황간고	5. 27 ~ 5. 29	63명 (남 36, 여 27)	32	2박 3일(1학년)
12		5. 31 ~ 6. 2		31	
13	청주농고	6. 28 ~ 6. 30	120명	40	2박 3일(2학년)
14		7. 1 ~ 7. 3		40	
15		7. 5 ~ 7. 7		40	
16	충주공고	7. 12	264명	66	1일체험(1학년)
17		7. 13		66	
18		7. 14		66	
19		7. 15		66	
20	단양공고	9. 2 ~ 9. 4	90명 (남 65, 여 25)	45	2박 3일(2학년)
21		9. 6 ~ 9. 8		45	
22	미원공고	9. 9 ~ 9. 10	171명 (남 116, 여 55)	29	1박 2일(2학년)
23		9. 13 ~ 9. 14		29	
24		9. 15 ~ 9. 16		29	
25		9. 17 ~ 9. 18		28	
26		9. 20 ~ 9. 21		28	
27		9. 22 ~ 9. 23		28	
28	제천농고	9. 30 ~ 10. 2	195명 (남 81, 여 114)	33	2박 3일(2학년)
29		10. 4 ~ 10. 6		33	
30		10. 7 ~ 10. 9		33	
31		10. 11 ~ 10. 13		32	
32		10. 14 ~ 10. 16		32	
33		10. 18 ~ 10. 20		32	
34	충북예고	10. 25 ~ 10. 27	121명 (남 11, 여 110)	30	2박 3일(2학년)
35		10. 28 ~ 10. 30		30	
36		11. 1 ~ 11. 3		30	
37		11. 4 ~ 11. 6		31	
38	진천농공고	11. 15 ~ 11. 16	130명 (남 60, 여 70)	44	1박 2일(2학년)
39		11. 17 ~ 11. 18		43	
40		11. 19 ~ 11. 20		43	

기수	교육대상교	교육기간	계획인원(명)		비고
			학교별인원	기별인원	
41	청주농고	11. 22 ~ 11. 24	37명	37	2박 3일(2학년)
42	금왕공고	11. 29 ~ 12. 1	34명	34	2박 3일(1학년)
43	보은자영고	12. 13	123명	31	1일체험(1학년)
44		12. 14	(남 85, 여 38)	31	
45		12. 15		31	
46		12. 16		30	
47	충북체육고	12, 17	50명	50	1학년
합계	총(15)개교	3. 29 ~ 12. 17	1,741명		

6. 2004년도 일반단체 계획

구분 순	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인원	비고
1	가족캠프	5. 22 ~ 5. 23	600	
2	가족캠프	5. 29 ~ 5. 30	600	
3	청소년상담연수	7. 22	170	
4	가족계획(성교육)	7. 26 ~ 7. 28	300	
5	여직원연수	7. 29	300	
계			1,970	

7. 2004년도 효 선도학교 체험학습 일정

기수	교육대상교	교육기간	계획인원			연인원	비고
			남	여	계		
1	문의중학교	6. 7 ~ 6. 8	15	23	38	76	3학년
2		6. 9 ~ 6. 10	27	19	46	92	2학년
3		6. 11 ~ 6. 12	24	21	45	90	1학년
합계			66	63	129	258	

8. 충북학생종합수련원(진천시설) 활성화 방안

가. 야영수련 운영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학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운영
- 수련활동 전문보조요원을 채용하여 대집단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소집단 활동으로 전환·운영
- 진천군과 연계한 수질오염 개선 : 진천군 수질관리 계획에 의거 2010년 1급수로 전환 - 수상활동 전개(카누, 보트 등)
- 문화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운영 : 진천 농 다리 답사(왕복 8km)와 자연 보호활동 병행 실시
- 지역교육청 및 도내 각급학교의 홍보자료 배부 및 방문으로 홍보활동 강화 (2월~3월에 집중 실시)
- 야영수련 담당교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사전 협의 및 시설물 답사로 적극 유치활동 강화
- 숙박시설 설치로 사설수련원 선호를 배제하고 수련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용 권장
- 학교장, 교사, 학부모의 관심 제고 및 사고 전환

나. 생활관 운영

- 노후된 시설은 점차적인 예산지원으로 해소방안 강구
- 일선 현장에서 예절 및 효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와 대표학생의 직접적인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각급학교에 일반화 도모 유도

■ 타시도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 현황

1.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수련원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22-2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 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9	6	5	19	8	48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 학교	학생수	비 고
중·고	35,000명	시 교육청 배정 운영

라. 특이 사항

- 초등학교 1년 1회 민간수련시설에서 학교자체프로그램 운영
- 중학교 1년 1회 실시
- 고등학교 3년 1회 실시

2.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124-1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16	20	4	1	42

다. 2004 연수 및 야영수련 계획

구분 \ 학교	인원수	비 고
초·중·고	35,101명	교육청 배정 운영(야영수련)
교원연수	4,372명	교사 및 교감연수
간부학생(부적응학생)	2,200명	

라. 특이 사항

- 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및 간부학생 수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수련부에서는 논공야영장과 팔공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
- 학교자체프로그램 운영(입소한 학교의 지도교사가 운영)
- 초 6학년, 중·고 1학년 대상
- 4년에 1회 실시(학교별)
- 대구광역시교육감의 명을 받아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4개조 (A.B.C.D)로 편성하여 4년에 1회 실시

3.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336-1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 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2	3	3	8	2	19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 학교	학생수	비 고
초·중·고	27,658명	초·중 2004년 처음실시 (학교신청)

라. 특이 사항

- 초·중학교 1년 1회 실시하며 수련원프로그램과 학교자체프로그램을 협조
- 고등학교 2년 1회 실시
- 2003년도 까지 교육청에서 배정 운영하였으나, 2004년도 이용 학생수가 감소하여 교육청 배정운영으로 실시예정.
- 레크레이션 지도강사비 수련원 예산

4.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가. 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북암리 산 83-3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원어민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8	5	1	13	1	1	30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 학교	학생수	비 고
중·고	11,520명	교육청 배정

라. 특이 사항

- 학교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원에서 협조
- 간부학생 수련 및 야영수련
- 중학교 3학년 영어캠프운영

5.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144-37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6	4	1	13	16	41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 학교	학생수	비 고
중·고	8,358명	신 청

라. 특이 사항

- 교육원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성개발, 지도자과정, 향토문화 탐사 과정 운영
- 야영수련은 지역야영장에서 운영(대송학생야영장)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격년제 운영
- 초·중학교는 야영수련시설 부족으로 민간수련 시설에 위탁 운영
- 학교자체프로그램운영

6. 강원도학생수련원

가.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123-19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공익요원	계
인원수	1	1	5	7	2	1	17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 학교	학생수	비 고
초·중·고	18,000명	학교신청

라. 특이 사항

- 학교자체프로그램운영은 수련원과 학교 공동 운영
- 숙박동이용

7. 충청남도학생수련원

가. 주 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산 6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별정직	간호사	파견교사	기능직	계
인원수	1	1	2	3	1	1	7	16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학생수	비 고
초·중·고	7,900명	학교신청

라. 특이 사항

- 프로그램운영은 수련원과 학교 공동 운영
- 트러스코 프로그램 운영(인라인 롤러, 스키, 산악)

8. 전라북도학생교육원

가. 주 소 : 전북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45지

나. 직원현황

구분	직별	전 문 직				일반직	별정직	식 품 생 위	간호사	기능직	과 건 교 사	합 계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인원수	본원	2	1	3	6	3	3	1	1	14	3	31
	분원			1	1	1				2	1	5
	계				7	4	3	1	1	16	4	36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학교수	학생수	비 고
중학교		600	간부학생수련
고등학교	45	6,864	야영수련(1, 2학년)
계	45	7,464	도교육청 배정 운영

라. 특이 사항

-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정 운영
배정방법 : 전라북도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운영
(전라북도학생교육원과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격년제로 실시)
- 현장체험 6개 과정, 공동생활 5개 과정, 자아성찰 3개 과정, 대화 1개 과정 프로그램운영

9.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

가.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간호사	기능직	과건교사	합 계
인원수	1	6	7	2	1	15	2	34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학교 \ 구분	학 생 수	비 고
고	2,000명	학교신청

라. 특이 사항

- 교육원에서는 고등학교 간부학생, 실업계고등학교 1, 2년, 중도탈락자,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운영
- 전남월출야영장 특색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본 수련원과 유사하나 몇 가지 특징을 들면,
 - 극기수련 산악활동
 - 재난구조 레펠
 - 도전과 모험 카누
 - 역사 문화유적지 답사 순례 운영으로 프로그램 진행
- 시설이 튼튼하고 녹슬지 않는 백동관으로 되어있고, 안전시설이 잘되어 있음
- 수련원 이용 신청 시 경합이 될 경우 처음 신청한 학교를 우선으로하고, 신청이 안된 경우 사설 수련원 이용(본 수련원과 대조적)
- 지역야영장에서 야영수련 실시(학교신청을 받아)

10. 경상북도화랑교육원

가. 주 소 : 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 56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파견교사	기능직	계
인원수	1	15	6	4	4	21	51

다. 2004 수련 계획

구분 \ 학교	학생수	비 고
중·고	5,092명	도교육청 배정

라. 특이 사항

- 교육원에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도자과정, 자기개발과정을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심성개발, 적응력배양과정 운영
- 지역 20개 야영장에서는 도교육청 배정으로 야영수련활동 실시
-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 외래강사 야영장 협조(레크레이션) 운영

11. 경상남도학생교육원

가. 주 소 : 경남 의령군 가래면 대승리 482-2번지

나. 직원현황

구분 \ 직별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파견교사	계
인원수	1	4	5	1	13	6	30

다. 2004 수련 계획

구분 \ 학교	학생수	비 고
고	4,725명	교육청배정

라. 특이 사항

- 교육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검도, 골프, 암벽, 예절, 역할극, 캠프, 등반과정 운영
- 지역야영장에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 프로그램을 운영
- 야영장에서 설치한 텐트이용(숙박용)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진 옥 경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질문 요지

- 인건비 편성 관련 자료

답변 내용

-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 2004 기준)

구분	지급시기	지급단가	산출기초	비고
101. 보 수				
01. 봉 급	매월	월호봉급	평균호봉월액 * 12월 * 인원	
02. 상 여 금				
기말수당	3, 6, 9, 12월	200%	봉급총액 * 2/12	
정근수당	1, 7월	50% - 100%	봉급총액 * 지급율(100%) * 2/12	
03. 성과상여금				
교원				
교장, 4급상당 장학관, 연구관			직급별기준액*정원*55%	
교감, 5급상당 장학관, 연구관			직급별기준액*정원*55%	
교사, 장학사, 연구사			직급별기준액*정원*55%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기능10급				
04. 정액수당				
가. 가족수당	매월			
배우자			30,000원 * 12월 * 인원	
직계존속			20,000원 * 12월 * 인원	
직계비속			20,000원 * 12월 * 인원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2, 5, 8, 11월			
중학교 1급지			분기지급액 * 4회 * 인원	
고등학교				
1급지 "가"			분기지급액 * 4회 * 인원	
1급지 "나"			분기지급액 * 4회 * 인원	
2급지 "가"			분기지급액 * 4회 * 인원	
2급지 "나"			분기지급액 * 4회 * 인원	
다. 정근수당가산금	매월			
05 - 10년		50,000	50,000원 * 12월 * 인원	
10 - 15년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15 - 20년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20년 이상		100,000	100,000원 * 12월 * 인원	
다-1.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매월			
20-25년		10,000	10,000원 * 12월 * 인원	
25년 이상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라. 교직수당			250,000원 * 12월 * 인원	
마.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			50,000원 * 12월 * 인원	
바. 교직수당가산금(보직교사)			60,000원 * 12월 * 인원	

□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 2004 기준)

구 분	지급시기	지급단가	산 출 기 초	비고
사. 교직수당가산금(특수학교근무교원)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교담당			50,000원 * 12월 * 인원	
방송통신고 겸직교원			50,000원 * 12월 * 인원	
아.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교사)				
자. 교직수당가산금(실과교원)	매월		100,000원 * 12월 * 인원	
1호봉 - 4호봉		25,000	25,000원*12월*인원	
5호봉 - 8호봉		30,000	30,000원*12월*인원	
9호봉 - 13호봉		35,000	35,000원*12월*인원	
14호봉 - 21호봉		40,000	40,000원*12월*인원	
22호봉 - 30호봉		45,000	45,000원*12월*인원	
31호봉 - 40호봉		50,000	50,000원*12월*인원	
기계공고 교장, 교감, 기계과목교사		10,000	10,000원*12월*인원	
전자공고 교장, 교감, 전자통신및전기과목교사		10,000	10,000원*12월*인원	
차. 교직수당가산금(보건교사)	매월	30,000	30,000원*12월*인원	
가. 교원보전수당				
유치원, 초등교원(중,고 특수포함)	매월			
5년 이상			8,000원*12월*인원	
5년 미만			23,000원*12월*인원	
중등교원				
도서벽지				
5년 이상		3,000	3,000원*12월*인원	
5년 미만		18,000	18,000원*12월*인원	
도서벽지이외의 지역근우교원				
5년 미만		15,000	15,000원*12월*인원	
다. 교원보전수당가산금				
유치원, 초등교원(특수학교 포함)				
교장, 원장		67,000	67,000원*12월*인원	
교감, 원감		57,000	57,000원*12월*인원	
보직교사		52,000	52,000원*12월*인원	
교 사		47,000	47,000원*12월*인원	
라. 연구업무수당				
장학관, 교육연구관				
5년이상		22,000	22,000원 * 12월 * 인원	
5년미만		37,000	37,000원 * 12월 * 인원	
장학사, 교육연구사				
5년이상		17,000	17,000원 * 12월 * 인원	
5년미만		32,000	32,000원 * 12월 * 인원	
4급상당 이상 보직 장학관				
5년이상		7,000	7,000원 * 12월 * 인원	
5년미만		22,000	22,000원 * 12월 * 인원	
교재연구수당				

□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 2004 기준)

구분	지급시기	지급단가	산출기초	비고
	5급이상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6급이상	40,000	40,000원 * 12월 * 인원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원장	110,000	110,000원 * 12월 * 인원	
	부장	100,000	100,000원 * 12월 * 인원	
	장학(연구)관, 장학(연구)사, 교사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하. 특수자급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매월			
	'가' 지역	50,000	50,000원 * 12월 * 인원	
	'나' 지역	40,000	0,000원 * 12월 * 인원	
	'다' 지역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라' 지역	20,000	20,000원 * 12월 * 인원	
거. 관리업무수당(4급<상당>이상)	매월		평균효봉월액 * 12월 * 인원 * 10%	
너.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매월			
	대우공무원			
	5급		평균효봉월액 * 12월 * 인원 * 6%	
	6급		평균효봉월액 * 12월 * 인원 * 6%	
	7급		평균효봉월액 * 12월 * 인원 * 6%	
	8급		평균효봉월액 * 12월 * 인원 * 6%	
	9급		평균효봉월액 * 12월 * 인원 * 6%	
	10급		평균효봉월액 * 12월 * 인원 * 6%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매월 100,000	100,000원 * 12월 * 인원	
더. 모범공무원수당	매월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러. 안전관리수당	매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5,000	15,000원 * 12월 * 인원	
	위험물(소방법)및도시가스안전관리자	10,000	10,000원 * 12월 * 인원	
머. 민원업무수당	매월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버. 전산업무수당	매월		평균단가 * 12월 * 인원	
	3년이상	50,000	50,000원 * 12월 * 인원	
	1-3년미만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1년미만	20,000	20,000원 * 12월 * 인원	
서. 사서수당	매월			
	5급 이상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6급 이하	20,000	20,000원 * 12월 * 인원	
어. 위험근무수당	매월			
	갑종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을종	20,000	20,000원 * 12월 * 인원	
저. 기술업무수당	매월			
쳐. 의료업무등의수당(간호직)	매월	50,000	50,000원 * 12월 * 인원	
커. 의사수당	매월			
	3급이상	120,000	120,000원 * 12월 * 인원	

□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2004 기준)

구	분	지급시기	지급단가	산 출 기 초	비고
	4급		100,000	100,000원 * 12월 * 인원	
	5급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6급 이하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일반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0,000	50,000원 * 12월 * 인원	
	타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타 자동차 운전정비업무수당	매월			
	자동차운전공무원		40,000	40,000원 * 12월 * 인원	
	정비업무종사공무원		20,000	20,000원 * 12월 * 인원	
	타 명예퇴직수당				
	고 육아휴직수당		300,000	300,000원 * 12월 * 인원	
	노 전문직위수당				
	도 봉급조점수당			봉급총액 * 1/12 * 30	
05.	초과근무수당	매월			
	교원				
	정액분				
	교(원)감, 장학관, 연구관		8,961	8,494원 * 12월 * 인원 * 15시간	
	30호봉이상		8,352	8,352원 * 12월 * 인원 * 15시간	
	20 - 29호봉		7,742	7,338원 * 12월 * 인원 * 15시간	
	19호봉이하		6,917	6,917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추가분				
	교(원)감, 장학관, 연구관		8,961	8,494원 * 12월 * 인원 * 4시간	
	30호봉이상		8,352	8,352원 * 12월 * 인원 * 4시간	
	20 - 29호봉		7,742	7,338원 * 12월 * 인원 * 4시간	
	19호봉이하		6,917	6,917원 * 12월 * 인원 * 4시간	
	일반직				
	정액분				
	일반 5 급		8,772	8,315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일반 6 급, 기능6급		7,443	7,055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일반 7 급, 기능 7 급		6,697	6,330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일반 8 급, 기능 8 급		5,985	5,673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일반 9 급, 기능 9 급		5,367	5,087원 * 12월 * 인원 * 15시간	
	기능10급		4,855	4,602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추가분				
	일반 5 급		8,772	8,315원 * 12월 * 인원 * 4시간	
	일반 6 급, 기능6급		7,443	7,055원 * 12월 * 인원 * 4시간	
	일반 7 급, 기능 7 급		6,697	6,330원 * 12월 * 인원 * 4시간	
	일반 8 급, 기능 8 급		5,985	5,673원 * 12월 * 인원 * 4시간	
	일반 9 급, 기능 9 급		5,367	5,087원 * 12월 * 인원 * 4시간	
	기능10급		4,855	4,602원 * 12월 * 인원 * 4시간	
06.	징액급식비	매월	120,000	120,000원 * 12월 * 인원	
07.	교통보조비	매월			

□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 2004 기준)

구	분	지급시기	지급단가	산 출 기 초	비교
	교원				
	교(원)장		200,000	200,000원 * 12월 * 인원	
	교(원)감		140,000	140,000원 * 12월 * 인원	
	교 사		130,000	130,000원 * 12월 * 인원	
	3급상당(기관장)		200,000	200,000원 * 12월 * 인원	
	4급상당(국, 과장)		140,000	140,000원 * 12월 * 인원	
	5급상당(장학관, 연구관)		140,000	140,000원 * 12월 * 인원	
	장학사, 연구사		130,000	130,000원 * 12월 * 인원	
	일반직				
	3 급		200,000	200,000원 * 12월 * 인원	
	4급 - 5급		140,000	140,000원 * 12월 * 인원	
	6급 - 7급		130,000	130,000원 * 12월 * 인원	
	8급 이하		120,000	120,000원 * 12월 * 인원	
	08 가계지원비			봉급총액 / 12 * 250%	
	09 명절휴가비			봉급총액 / 12 * 150%	
	10 연가보상비			봉급총액 / 12 * 20/24	
	11 기타수당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전임강사 인건비				
	기간제 교사 인건비				
	02 기타상용인부임				
	03. 재경비				
	전임강사 퇴직금				
	전임강사 연금보험료				
	전임강사 보험고용료				
	전임강사 산재보험료				
	전임강사 국민건강보험료				
	기간제교원 퇴직금				
	기간제교원 연금보험료				
	기간제교원 보험고용료				
	기간제교원 산재보험료				
	기간제교원 국민건강보험료				
203.	정액업무비				
	01. 적급보조비	매월			
	교원				
	3급상당(기관장)		500,000	500,000원 * 12월 * 인원	
	교(원)장, 4급상당(국.과장)		400,000	400,000원 * 12월 * 인원	
	교(원)감, 5급상당(장학관, 연구관)		250,000	250,000원 * 12월 * 인원	
	장학사, 연구사		155,000	155,000원 * 12월 * 인원	
	일반직				

□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 2004 기준)

구	본	지급시기	지급단가	산 출 기 초	비고
	3급		500,000	500,000원 * 12월 * 인원	
	4급		400,000	400,000원 * 12월 * 인원	
	5급		250,000	250,000원 * 12월 * 인원	
	6급		155,000	155,000원 * 12월 * 인원	
	7급		140,000	140,000원 * 12월 * 인원	
	8급-9급		105,000	105,000원 * 12월 * 인원	
	10급		95,000	95,000원 * 12월 * 인원	
03. 특수업무활동비		매월			
	감사담당				
	감사담당관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감사요원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예산담당				
	본청		150,000	150,000원 * 12월 * 인원	
	지역교육청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평생교육담당				
	평생업무담당과장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평생교육담당자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교직원채업무담당				
	교직원채업무담당과장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교직원채업무담당자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담당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담당과장		80,000	80,000원 * 12월 * 12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담당자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301. 보 상 금					
	03. 부담금				
	연금부담금			(기본급+기말+정근+정근가산) * 8.5%	
	보 전 금			(기본급+기말+정근+정근가산) * 0.22%	
	퇴직수당부담금			(기본급+기말+정근+정근가산) * 3.6541%	
	재해보상부담금			(기본급+기말+정근+정근가산) * 0.054%	
	건강보험부담금			총과세급여 * 1.97%	
	04. 법정포상금				
	05. 기타포상금 등				
303. 출 연 금					
	01. 출연금				
	대여장학금				
304. 민간경상이전					
	04. 연금지급금				
	05. 보월금				
	06. 이차보전금				
합 계					

(유치원 교원 평균 호봉)
(시식 1) 1. 2003년 7월 식급비 호봉별 인원현황

구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인원	1	2	5	16	10	12	14	6	12	15	10	16	9	14	31	56	39	57	18	19	9	0	1
유치원 단기	766,900	819,200	843,700	887,800	892,400	937,100	981,700	1,038,400	1,071,400	1,115,700	1,182,300	1,208,500	1,284,700	1,391,000	1,332,400	1,403,600	1,454,800	1,505,900	1,537,200	1,610,800	1,664,500	1,720,300	1,776,500
유치원 연속	766,900	1,638,400	4,718,500	13,884,800	8,024,000	11,245,200	13,743,800	6,158,400	12,858,800	16,735,500	11,823,000	19,336,000	11,292,300	18,214,000	41,924,400	78,801,400	56,737,700	86,838,300	28,028,600	30,805,200	14,980,500	10,321,600	1,776,500
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0단기	51연속
인원	1	2	2	2	1	2	0	0	0	1	1	0	0	0	2	0	0	0	0	0	인원	392	343
유치원 단기	1,632,000	1,888,700	1,845,800	2,092,500	2,059,500	2,118,200	2,195,800	2,215,400	2,265,000	2,314,800	2,350,200	2,385,800	2,421,400	2,457,000	2,492,600	2,528,200	2,563,800	2,599,400	2,635,000	2,670,600	단기	1,349,208	623,688
유치원 연속	1,832,600	3,777,400	3,891,200	4,005,000	2,059,500	4,322,400	0	0	0	2,314,800	2,350,200	2,385,800	2,421,400	2,457,000	4,985,200	0	0	0	0	0	연속	528,928,800	1,152,811,488

(초등학교 교원 임금 조영)

(서식 1) 1. 2003년 7월 직급별 호봉별 인원현황

구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초등 학교 교원	796,900	819,200	843,700	867,800	892,400	937,100	961,700	1,008,400	1,071,400	1,115,700	1,163,300	1,208,500	1,254,700	1,301,000	1,327,400	1,403,600	1,454,800	1,505,900	1,557,200	1,610,600	1,664,500	1,720,300	1,776,500
교원 급액	8,765,900	16,384,000	70,970,800	86,780,000	118,904,400	251,142,800	172,779,200	214,517,600	248,564,800	217,561,500	142,862,900	181,838,000	146,798,900	162,625,000	162,288,000	214,750,600	212,400,900	222,873,200	225,794,000	149,804,400	138,818,000	111,819,500	115,472,500
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3합계	04합계	05합계
초등 학교 교원	83	85	120	144	100	98	116	167	189	181	150	136	147	111	95	84	81	80	18	14	민원	5,146	5,146
교원 급액	1,832,600	1,888,700	1,945,600	2,002,500	2,059,500	2,116,200	2,165,800	2,215,400	2,265,000	2,314,600	2,360,200	2,385,800	2,421,400	2,457,000	2,482,600	2,528,200	2,563,800	2,598,400	2,635,000	2,670,600	단기	1,662,017	1,721,500
교원 급액	152,103,800	160,539,500	233,472,800	288,360,000	265,950,000	207,387,600	251,232,800	369,971,800	428,085,000	418,942,600	352,630,000	324,468,800	355,945,800	212,727,000	238,797,000	212,368,800	207,667,800	215,750,200	47,430,000	37,386,400	예산액	16,632,739,900	16,632,739,900

(중학교 교원 평균소득)
(서식 1) 1. 2003년 7월 직급별, 호봉별 임원현황

구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중학교 교원	796,300	819,200	843,700	867,800	892,400	937,000	981,700	1,026,400	1,071,400	1,115,700	1,162,300	1,208,500	1,254,700	1,301,000	1,352,400	1,403,600	1,454,800	1,505,900	1,557,200	1,610,800	1,664,500	1,720,300	1,776,500
교원	0	15,564,800	75,089,300	72,895,200	70,498,600	62,785,700	38,286,300	41,056,000	26,765,000	33,471,000	40,680,500	61,633,500	53,952,100	54,642,000	77,088,600	145,974,400	290,960,000	277,695,600	246,037,600	249,674,000	166,114,500	165,148,800	130,014,000
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3회계	
인원	80	90	97	88	76	86	55	77	50	47	52	45	50	45	37	33	31	21	10	8	인원	2,843	
단가	1,837,600	1,868,700	1,945,600	2,002,500	2,059,500	2,116,200	2,185,800	2,215,400	2,265,000	2,314,600	2,350,200	2,385,800	2,421,400	2,457,000	2,492,600	2,528,200	2,563,800	2,599,400	2,635,000	2,670,600	단가	1,695,641	
금액	146,998,000	169,983,000	189,267,200	176,228,000	160,641,000	179,877,000	119,119,000	170,985,600	113,250,000	108,786,200	122,210,400	107,361,000	121,070,000	110,565,000	92,226,200	83,430,600	79,477,800	54,987,400	26,350,000	21,364,800	0원	0원	0원
합계																						47,954,177,000	96,853,046,000

(고등학교 교원 평균 호봉)

(서서 1) 1. 2003년 7월 지급된 호봉별 인원현황

구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고등학교 교원	796,500	810,200	843,700	867,800	892,400	937,100	981,700	1,026,400	1,071,400	1,115,700	1,162,300	1,208,600	1,254,700	1,301,000	1,352,400	1,403,600	1,454,800	1,505,900	1,557,200	1,610,800	1,664,500	1,720,300	1,778,500
교원	796,500	10,649,600	54,840,500	60,746,000	59,790,800	49,666,300	29,451,000	40,029,600	43,927,400	25,661,100	40,690,600	43,506,000	36,396,300	37,729,000	81,144,000	124,926,400	180,028,000	192,752,200	200,878,800	194,906,800	136,499,000	123,861,600	145,673,000
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3인원	04인원
고등학교 교원	1,820,600	1,988,700	1,945,600	2,002,500	2,059,500	2,116,200	2,165,800	2,215,400	2,265,000	2,314,600	2,360,200	2,396,600	2,421,400	2,457,000	2,492,800	2,528,200	2,563,600	2,599,400	2,635,000	2,670,600	5	2,428	2,428
교원	141,110,200	181,315,200	153,648,000	198,247,500	214,198,000	215,822,400	132,113,800	146,216,600	108,720,000	101,842,400	126,910,600	102,569,400	104,120,200	71,253,000	52,344,600	53,692,200	41,026,800	15,996,400	23,715,000	13,353,000	08인원	4,093,787,100	51,827,118,800

(특수학교 교원 임금 조항)
 (서식 11. 2003년 7월 지급일 호봉별 인건비)

구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인원				6	2	5	3	3	3	6	4	7	1	1	1	4							
■ 특수 교원	796,500	819,200	843,700	867,000	892,400	937,100	981,700	1,026,400	1,071,400	1,115,700	1,162,300	1,208,500	1,254,700	1,301,000	1,352,400	1,403,800	1,454,800	1,505,900	1,557,200	1,610,800	1,664,500	1,720,300	1,776,500
금액	0	0	0	5,206,800	1,784,800	4,685,500	2,945,100	3,079,200	3,214,200	8,925,600	4,649,200	8,459,500	1,254,700	0	0	2,897,200	1,454,800	1,505,900	6,228,800	0	0	0	1,776,500
■ 교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3인원	04인원
인원	1	1	1	1	1	2	1	1	2	1	1	1	1	1	1	1	1	1	1	1	인원	65	85
■ 특수 교원	1,832,600	1,889,700	1,945,600	2,002,500	2,059,500	2,116,200	2,169,800	2,215,400	2,265,000	2,314,500	2,350,200	2,395,800	2,421,400	2,457,000	2,492,600	2,538,200	2,563,800	2,599,400	2,635,000	2,670,600	인원	단기	1,448,200
금액	1,832,600	1,888,700	0	2,002,500	2,059,500	4,232,400	2,169,800	0	4,530,000	0	2,350,200	2,385,600	0	0	0	0	2,563,800	2,599,400	2,635,000	0	0	0	88,223,500
																							1,128,946,000

(보장진문지 평균회보)

(사식 1) 1. 2003년 7월 지급별, 호응별 인원현황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구분																							
인원																							
단기	796,900	819,200	843,700	867,900	892,400	937,100	981,700	1,026,400	1,071,400	1,116,700	1,162,300	1,208,500	1,254,700	1,301,000	1,352,400	1,403,600	1,454,800	1,506,900	1,557,200	1,610,800	1,664,500	1,720,300	1,776,500
진원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3월계	0
인원	1	1	2	3	5	4	7	6		2	5	4	2	2	1	3	1	2	1		인원	53	
단기	1,832,600	1,848,700	1,945,600	2,002,500	2,059,500	2,116,200	2,165,800	2,215,400	2,265,000	2,314,600	2,350,200	2,385,800	2,421,400	2,457,000	2,492,600	2,528,200	2,563,800	2,599,400	2,635,000	2,670,600	단기	2,230,428	2,281,600
금액	1,832,600	1,889,700	3,981,200	6,007,500	10,297,500	8,464,800	15,160,600	13,292,400	0	4,629,200	11,751,000	9,543,200	4,842,800	2,457,000	4,985,200	7,584,600	2,563,800	5,198,800	2,655,000	0	예산액	118,636,700	1,901,977,400

(지역신문지 및 과외 광고료 포함)

(서식 1) 1. 2003년 7월 지급별, 호봉별 인력현황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구분																							
인원																							
지역 신문	796,900	819,200	843,700	867,800	892,600	937,100	981,700	1,026,400	1,071,400	1,115,700	1,162,300	1,208,500	1,254,700	1,301,000	1,352,400	1,403,600	1,454,800	1,505,900	1,557,200	1,610,800	1,664,500	1,720,300	1,776,500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54,800	0	3,114,400	3,221,600	4,993,500	1,720,300	1,776,500
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3월계	04월계
인원	5	6	5	7	9	8	5	5	12	5	7	7	3	1		3			2		인원	96	
지역 신문	1,837,600	1,898,700	1,945,600	2,002,500	2,059,500	2,116,200	2,165,000	2,215,400	2,265,000	2,314,600	2,360,200	2,385,600	2,421,400	2,467,000	2,492,600	2,528,200	2,563,800	2,599,400	2,635,000	2,670,600	2,706,200	2,741,800	2,777,400
금액	9,163,000	11,332,200	9,728,000	14,017,500	16,535,500	12,697,200	10,829,000	11,077,000	27,180,000	11,573,000	16,451,400	16,700,600	7,264,200	2,457,000	0	7,894,600	0	0	5,270,000	0	0	0	2,035,190,000

(유치원인강사 교원 평균 호봉)
 (서식 1) 1. 2003년 7월 지급분 호봉별 인원현황

구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인원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단기	755	777	800	823	846	888	931	973	1,016	1,058	1,102	1,146	1,189	1,233	1,282	1,330	1,379	1,427	1,476	1,527	1,578	1,631	1,684
금액	0	0	0	823	846	0	1,951	973	0	1,058	0	1,146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구분	03월개	0
인원																					인원	7	7
단기	1,737	1,790	1,844	1,896	1,952	2,006	2,053	2,100	2,147	2,194	2,238	2,281	2,285	2,329	2,382	2,386	2,430	2,464	2,497	2,531	단기	658	658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산액	6,705	6,705

□ 일반직 직급별 기본급 산출

기관(부서)명 : 분청밀원터

구분	직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계	평균급액	최종단가					
일반직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일반4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일반5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일반6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일반7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일반8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기부7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기부8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기부9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기부10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합계(일반)																																									

□ 일반직 직급별 기금급 산출

기준(부사)의 :역사적 및민서

구분	소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계	평균점액	비중단가				
기18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19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0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1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2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3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4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5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6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7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8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29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30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31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32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33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34	인원																																							
	단가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35	인원																																							

□ 일반직 직급별 기본급 산출

기관(부서)명 : 중앙교원직

구분	요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계	명규금액	최종단가			
중 학 교	월급3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월급5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월급6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월급7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월급8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월급9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월급10 인봉																																							
단가																																							
급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봉																																							
합계(인봉)	0	2	7	13	5	10	8	8	18	11	13	16	12	15	15	18	16	20	22	11	17	14	20	16	7	11	3	6	8	4	1	16	365	0.000					

□ 일반직 지급별 기금금 산출

기관(부서)명 : 고등학교 일반직

구분	요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계	명단총액	시종단가		
교	일반직																																					
	단가																																					
총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과	일반4																																					
	단가																																					
항목5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항목7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항목8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항목9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항목10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합계(인원)	금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원																																					

서 면 답 변

성영용 위원

충청북도교육청

질 의

2003년도 중식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2003년도 저소득층가정 중식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709,240천원 중 집행액이 5,509,936천원으로 잔액 199,30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 초·중학교의 경우 학기중 급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국고 및 교특지원 단가와 학교에서 집행되는 급식비 단가(1식당 200원~300원)차액, 식품 구매에 따른 입찰차액 등이 잔액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고등학교의 3학년생이 2학기 현장실습 및 취업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독지가 및 사회단체 등과의 자매결연 및 성금 등으로 인한 지원자의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일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저소득층가정 중식지원사업은 일부 국고가 지원되는 목적사업 비로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하여 확대 지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2003년도 중식지원 지원현황

- 지원인원 : 16,533명(초 8,014, 중 4,509, 고 4,010)
- 지원일수 : 연간 365일
- 지원단가(1인 1식당)
 - 학기중 : 초 1,500원, 중·고 2,000원
 - 토·공휴일 및 방학중 : 초·중·고 3,000원

※ 2003년도 중식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집 행 액(B)	잔 액(A-B)	비 고
초등학교	2,422,980	2,367,794	55,186	
중 학 교	1,736,025	1,711,396	24,629	
고등학교	1,472,805	1,367,956	104,849	
국립학교	77,430	62,790	14,640	
계	5,709,240	5,509,936	199,304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성 영 용	소 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	-------	-----	-----------

질문 요지

- 2003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
- 2004년 민간단체 예산편성 현황

답변 내용

-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003. 세출예산 절감 계획

1. 목 적

- 세출예산 절감으로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자 함.

2. 대상기관

- 본청,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교육청 직속 포함)

3. 대상경비

- 2003. 세출예산 중 경상사업경비
 -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체세,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 여 비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교육위원회비 중 여비, 위원회공통경비
- 절감제외 경비
 - 절감대상 경비 중
 - 법령 또는 계약체결로 지출소요가 확정되어 절감이 곤란한 경비 등
 - 국고보조사업, 연수경비(여비포함), 원어민교원관리 등

4. 경비별 절감

- 절감대상 세목별로 절감대상 경비에서 절감제외 경비를 제외한 예산액의 5% 절감

5. 추진방법

- 각 기관(부서)의 장은 경상경비에 대하여 자율적인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절약집행
- 세출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산정된 각 기관(부서)별 절감목표액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목 상호간 대체 절감가능

6. 행정사항

- 본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교육위원회, 교육청(교육청 직속 포함)에서는 절감계획을 2003. 1.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2. 세출예산 절감실적 포함)

2003. 기관(부서)별 예산절감 총괄

[기관(부서)별]

(단위:천원)

기관(부서)별	2003예산액	절감제외액	절감대상액	절감액	비 고
교육위원회	237,275	0	237,275	11,863	
공보감사담당관실	426,136	285,731	140,405	7,020	
초등교육과	507,472	266,997	240,475	12,021	
중등교육과	1,843,552	1,027,909	815,643	40,781	
과학실업교육과	58,300	23,000	35,300	1,765	
교육정보화과	2,079,349	1,857,195	222,154	11,106	
평생교육체육과	162,030	120,540	41,490	2,074	
총 무 과	1,071,219	238,691	832,528	41,620	
기획관리과	325,057	16,302	308,755	15,437	
학교운영지원과	183,209	64,949	118,260	5,912	
시 설 과	48,520	0	48,520	2,426	
소 계	6,942,119	3,901,314	3,040,805	152,025	
교육과학연구원	1,125,153	587,257	537,896	26,892	
단재교육연수원	626,623	414,361	212,262	10,612	
중앙도서관	434,339	85,781	348,558	17,426	
충북학생회관	120,610	11,520	109,090	5,452	
학생종합수련원	122,721	5,340	117,381	5,866	
소 계	2,429,446	1,104,259	1,325,187	66,248	
청주교육청	613,450	82,076	531,374	26,567	
충주교육청	503,455	84,089	419,366	20,965	
제천교육청	501,861	30,137	471,724	23,585	
청원교육청	407,350	27,330	380,020	18,999	
보은교육청	384,259	32,593	351,666	17,581	
옥천교육청	389,986	72,906	317,080	15,851	
영동교육청	413,576	62,988	350,588	17,525	
진천교육청	336,820	25,290	311,530	15,573	
괴산교육청	446,000	30,619	415,381	20,767	
음성교육청	420,796	23,080	397,716	19,881	
단양교육청	338,491	30,507	307,984	15,396	
소 계	4,756,044	501,615	4,254,429	212,690	
합 계	14,127,609	5,507,188	8,620,421	430,963	

2004. 민간단체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지원단체명	예산액			비고
			본청	지역	계	
초 등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단체	11,000	1,000	12,000	
	논술경시대회	유네스코충북협회	2,000		2,000	
	유관기관교육행사협찬	10개기관	10,000		10,000	
	사회단체교육활동경비지원	삼락회	27,000		27,000	
	계		50,000	1,000	51,000	
중 등	지역별 교외생활지도위원회지원	11개지역	25,000	14,200	39,200	
	약물중독교정치료지원금	청주의료원	4,000		4,000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5,000		5,000	
	청소년한마음축제	충북예총외 5	60,000	35,000	95,000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청소년수련관외2	30,000		30,000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 지원	교원단체 2	10,000		10,000	
	계		134,000	49,200	183,200	
교 정	ICT활용교과연구회활동지원	교과연구회14	43,000		43,000	
	S/W전람회전국공모전우수작품제작비지원	80편	8,000		8,000	
	계		51,000	0	51,000	
평 체	비정규교육시설운영지원	무궁화야간학교외8	22,500		22,500	
	시설평생 학습관운영	청주지역사회협의회외1	10,000		10,000	
	학원장연수경비	충북학원연합회	10,000		10,000	
	청소년단체활동지원	RCY외 11	48,000		48,000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지원	주부교실충북지부	3,000		3,000	
	충북소년체전 지원	육상경기연맹외 29단체	15,000		15,000	
	학교간경기 지원	육상경기연맹외 4단체	500		500	
	교육감기대회 운영	육상경기연맹외 29단체	15,000		15,000	
	시군대학역전마라톤대회 지원	언론사(충청일보)	2,000		2,000	
	도지사기차지역전마라톤대회지원	언론사(중부매일)	2,000		2,000	
	도내학생체육대회 지원	육상경기연맹외 9단체	2,000		2,000	
	도대표선발평가전 지원	육상경기연맹외 19단체	6,000		6,000	
	계		136,000	0	136,000	
	총 무	교육관련단체지원	문우회	2,000		2,000
학 운	학교연합회지원	학교운영협의회	7,000	33,000	40,000	
합 계			380,000	83,200	463,200	

